

제419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13일(금)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0)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1)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0)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6)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9)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3)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6)
10.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4)
1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6)
1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6)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4)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1)
1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4)
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
1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3)
1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4)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19)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842)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32)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0)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7)
 2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6)
 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7)
 2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8)
 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5)
 2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1)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1)
 30.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31. 현안질의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추가)
 32. 현안질의 추가 자료제출요구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31. 현안질의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4
1.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4
o 소위원장(최형두) 인사	4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0)	5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1)	5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0)	5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6)	5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9)	5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3)	5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9.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6)	5
10.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4)	5
1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6)	5

1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6)	5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4)	5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1)	5
1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4)	5
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	5
1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3)	5
1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4)	5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19)	5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842)	5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32)	5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0)	5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7)	6
2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256)	6
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7)	6
2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8)	6
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5)	6
2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1)	6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1)	6
30.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14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61
32. 현안질의 추가 자료제출요구의 건	61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간사님들 이제 오시라고 해 주세요.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와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인 의결부터 합니다. 김현 간사님 오시라고 하세요.

이해민 위원님은 출석 안 하십니까? 혹시 보좌관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석 옆에서 — 오전에 일정이 있으셔서 오후에……)

오후에는 없습니다, 국회가.

우리 위원회에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만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첫 번째가 본회의 그리고 두 번째가 상임위원회입니다. 이 2개의 출석이

학교 가는 거고요, 꼭 출석하셔야 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31. 현안질의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 12월 13일 현안질의에 출석을 요청하는 현안질의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3년 12월 13일 현안질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기 바랍니다.

1.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을 실시하고 소위원회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소위원장이신 최수진 위원께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과 소위 위원을 사임하게 되었으며 최형두 위원을 소위 위원으로 보임하고 소위원장으로 선임, 선출하자는 위원님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 위원을 사보임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최형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소위원장(최형두) 인사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에 유일한 예산조정소위 위원으로 지난 11월 하순 2주간은 예산조정소위가 집중적으로 열려서 우리 모두가 협의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쪽 예산을 여야가 합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려고, 소위를 제대로 주재할 수가 없어서 최수진 위원이 맡기로 해서 잠깐 소위원장장을 떠나서 예산조정소위에 열중하느라 그동안 열중을 못 했습니다.

다시 최수진 위원께서 사임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원회를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 원자력 또 우리 전체가 하는 정보통신에 대해서, 방송에 대해서도 함께 법안 개정, 규제 완화 또 예산에 대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참석해 주셨는데 다른 국민의힘 과방위원들께서도 참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20)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51)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80)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836)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749)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3)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6)
10.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4)
1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6)
1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6)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4)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1)
1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4)
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
1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3)
1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4)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9)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2)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2)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0)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7)
2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256)
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7)
2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8)
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5)
2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1)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1)

(10시07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2항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저번 회의에서 소위 심사보고가 완료된 후 계속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된 법률안이며,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9항까지는 오늘 처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입니다.

먼저 저번 회의에서 계류되었던 법률안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현 위원님 나가셔서 수정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김현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 유인물을 6쪽을 보시면, 제22조제3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는 5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현행대로 민간기구로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제26조, 26조의2, 27조 및 29조의2는 현행대로 하였고 제28조에서 심의위원회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사무처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로 하면서 단서에서 심의위원회 등의 임명 절차 등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 제5조에서 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에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심의센터 신설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부칙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최형두 간사님, 의견 없으십니까?

○최형두 위원 지금 9항까지? 8항까지?

○위원장 최민희 2항부터 제8항까지입니다.

○최형두 위원 신속하게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 저는 해촉안을 냈었는데 해촉보다 탄핵이 완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무원 신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해촉으로 발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의 소지나 그런 게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위원장 최민희 어떤 문제의 소지를 말씀하십니까?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3명의 정무직을 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절차상이나…… 원래는 공무원 조직법은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법안이 통과되는 데 문제의 소지는 전혀 없는지 전문위원한테 그런 것만 한 번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건 김현 위원님이……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위원장 최민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십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방심위를 장관급 정무직으로 하고 2명의 위원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부분은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례에 따라 국가기구로 만드는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런 정무직에 대해서 법률로 탄핵 대상으로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 법은 정권이란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하에서도 작동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법을 고민한 것은 전대미문의 류희림 위원장 같은 분이 방심위원장으로서 정파적 폭거를 휘두르기 때문에 고민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만약에 민주 정부가 들어섰는데 류희림 위원장에 준하는 그런 행태를 한다면 그 사람 또한 탄핵되어야 합니다. 방심위원장은 방심위원장 역할을 해야지 어떤 정부든 정부의 충견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원 문제는 제가 방송위원회 있을 때 6급 직원 하나 늘리는 것 가지고 기재부와 정부부처하고 많이 얘기를 해 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풀어야 될 문제지 여러분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2분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논란이 많은 법이고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방송심의위원회를 민간기구로 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민간기구로서, 자율기구로서……

○위원장 최민희 민간기구예요, 지금.

○최형두 위원 예? 민간기구잖아요, 지금.

○위원장 최민희 지금도 바꿔도 민간기구예요.

○최형두 위원 그런데 이 주요 내용이 그런 민간기구로 만들려는 취지와 상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무직으로 두고 또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직접 정치의 영향에 들어오는데, 지금은 여야가 다 같이 추천하기로 해서……

결국은 참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지금 이렇게 바꿔 버리면 당초에 민간의 자율기구로 해서 했던 그 취지가 퇴색하고 더구나 정치권이 여야가 바뀌면 또 이걸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심위에 대해서는 지난 7개월가량 야당 위원님들이 충분히 견제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밝혀내고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는 방심위에서는 방심위대로 또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 있고 또 방심위의 당초 심의 기능인 원래 방송심의 또 통신에 관한 지금 여러 보안 문제들, 국민들을 통신상의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사이버상의 침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당초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당초에 방심위를 민간 통제기구로 한 이유, 마찬가지겠지요. 왜 공영방송을 다 그냥 국가 국영방송으로 하지 않고 공영방송으로 했겠느냐 이런 것, 좀 근본적인 문제 같습니다.

교각살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케이스를 두고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전체의 틀을 바꿔 버린다는 것은 방송심의위원회를 자율기구로 해서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를 하려는 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잠깐만요. 이건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구 방송위원회도 무소속 독립기구였습니다. 거기에 정무직 공무원이 5명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9명으로 구성됐는데 이게 심의를 하는 주체가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고요, 거기는 법적 절차만 맍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법을 바꿔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민간기구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 두고요.

그래서 제가 법안 심사할 때 다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정파적으로 싸우더라도 법안 심의할 때는 다 들어오셔서 토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는 확실히 해 둡니다. 이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형식적으로는 방심위가 독립돼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곤란한 문제에서는 독립기구라 우리가 답변 안한다고 그리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을 쫓아낼 때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쫓아냅니다. 아주 왜곡된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무직 위원이 3명 생기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도 실질적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후속 법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 독립기구로 방심위는 유지되는 것이고 그리고 방심위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조인철 위원님.

○최형두 위원 아니, 우리가 소위에 참석해서 이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소위에 참석했습니다.

○김현 위원 퇴장했지요.

○위원장 최민희 퇴장하셨잖아요. 어쨌든……

○최형두 위원 퇴장했는데 그건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좀 항의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

따가.

○**위원장 최민희** 조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인철 위원** 제가 방송위원회 설치법 관련한 심의에 참여한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지금 여쭤봅니다.

혹시 정무직 직원 중에 위원장하고 위원 간의 계급 차이가 있나요? 김건오 수석님, 정무직 3명 임명하면 위원장하고 정무 상임위원들 간의 계급 차이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조인철 위원** 어떻게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두 상임위원은 차관급이 되게 됩니다.

○**조인철 위원** 어디에 그 규정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장이 장관급이고 그것은 직제도……

○**조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법에 그 규정이 들어가 있느냐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 부분은 실제로 앞으로 규정이 되게 될 겁니다.

○**조인철 위원** 그것을 실제로 만든다고요, 장관급인지 차관급인지를?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아마 대통령령으로.

○**조인철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모르겠네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관급 위원장의……

○**조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장관이냐 아니냐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그런 입법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대통령령으로 장관급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장관·차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장관급으로 한다’, ‘차관급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냐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정무직이라고만 돼 있고요. 나머지 위원장하고 위원이 장관급이고 차관급이 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급여로 정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대통령령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급여상으로 위원장은 장관급의 급여를 주는 거냐, 그냥 장관급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정확히 규정을 찾아서 지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법에 방심위는 방통위에서 감사 같은 걸 할 수 있습니까?

○ 김현 위원 회계감사요.

○ 위원장 최민희 회계감사 할 수 있어요.

○ 조인철 위원 회계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 김현 위원 예.

○ 조인철 위원 그러면 장관급인데 장관급이 와서 회계감사를 하는 게 맞나요?

○ 김현 위원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지요.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고……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앞으로는……

○ 조인철 위원 아니, 감사원 감사는 당연한데 방통위원회에서 회계감사가 가능하다면서요?

○ 김현 위원 불가능하지요.

○ 위원장 최민희 현재 그렇다고 얘기했지요, 현재.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지금까지는 예산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은 거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

○ 조인철 위원 아니, 지금 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최민희 현재……

○ 조인철 위원 법에 근거가 있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심위원장의 회계감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최민희 아니, 조인철 위원님. 현재는 우리가 계속해서 김태규 위원뿐만 아니라, 대행뿐만 아니라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회계감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방통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회계감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연주 전 위원장을 쫓아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인철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급이 장관급을 회계감사 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법이 바뀌었을 때.

○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잠깐만요. 과거의 방심위는 장관급이라고 대우를 한다는 거지 장관급이 아니에요. 민간인 신분이었어요.

○ 조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바꿨을 때 이야기……

○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법을 바꾸면…… 그래서 제가 후속 입법도 같이 처리하자고 이미 전문위원회에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더 검토할 게 많으니까 후속 입법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조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법에 근거해서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사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조항도.

○ 위원장 최민희 예, 제가 그것 동의하고 그 법을, 후속 입법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 방송위원회가 무소속 독립기구입니다. 그게 국가기구인데 무소속 독립기구예요. 방송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요.

○ 조인철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종합적으로……

○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그때 방송위법 시행령에 장관급, 차관급을 나누었습니다. 그

법에 준용해서 한 겁니다.

○**조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 문제나 행정체계를 어떻게 받냐, 종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김건오 수석이.

○**위원장 최민희** 지금 왜 이러십니까?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 회계감사를……

○**위원장 최민희** 얘기를 못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후속 입법을 추진해야만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후속 입법이 추진될 거예요.

○**조인철 위원** 이것을 먼저 바꿔 놓고 방송통신 설치법도 다시 만들겠다?

○**위원장 최민희** 예, 고칠 겁니다.

○**노종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먼저 했어요.

김우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우영 위원** 지금은 국가적으로 아주 심각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방위의 입법 활동 하나하나가 국가를 다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이런저런 과정상의 복잡한 심려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각자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방심위법을 고쳐서 방심위원회에 대한 정무직 공무원 또 탄핵이 가능한 이런저런 제도를 개선하는 것 적극 찬성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올 4월, 6월에 전시 대응 관계 기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방심위원회가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비상사태 발령 시에 전시방송 특별지침에 따라 방송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방심위의 류희림은 사실상 내란 예비·음모에 가까운 행위를 해 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작년 9월 4일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신학림·김만배 보도에 대해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걸 방심위에 조치토록 하겠다고 한 다음에 방심위는 가족을 동원하는 등 자율 언론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것이 30 전 30패의 결과로 이어졌고 그 사건을 쭉 내려다보면 방심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로서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지켜 줘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그리고 내란의 기초적인 작업을 해 왔습니다. 저는 방심위원장 류희림을 과방위의 명의로 내란 방조·예비·음모로 고발해야 된다, 그걸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에 차관급과 장관급이라는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표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관급, 장관급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까 서류가 필요하다고 누가 그러셨는데 서류 드리세요.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지금 앞서 김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어서 우리 민주당 위원들 사이에 의견 조정 가능성성이 만약에 혹시라도 없어서 이 회의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내란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말씀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보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9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9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법률안 검토보고 차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과기부·방통위 소관 18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정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디지털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통신망·서비스 운영에 있어 큰 비용을 유발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공적 책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고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디지털 보편·접근권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우처 방식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는 주무부처의 의견과 미국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상 차별로서 한미 FTA 위반 우려가 있다는 의견,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정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 육성 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은 그 특성상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전협의의 대상 정보가 지나치게 넓어서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활동을 제약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정 범위로 한정하는 한편, 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할 차례입니다.

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의원실에서, 협찬제도 개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들이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최형두 위원 대체토론이라기보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도 있고 해서……

○위원장 최민희 예.

2분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오늘 여러 중요한…… 우리 국회가 지금 참 계엄 사태의 뇌관을 풀고 계엄을 막았습니다. 함께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엄 이후의 사태가 굉장히 불확실성에 빠지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 분야가 뒤처지지 않도록 입법적인 노력을 해서 산업을 진흥할 수 있고 또 규제를 완화해서, 정부가 재정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정부의 산업의 창의력으로 산업을 더 일으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는 지금 당장은 종결됐습니다만 조만간에 추경을 통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또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충권 의원 대표 법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지금 전파를 활용한 이동통신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데도, 또 수만 개의 이동통신 무선국이 준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에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신속한 최첨단 ICT 서비스 도입과 확산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여러 점 같은 것을 반영해서 이 산업이 더욱 진흥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잘 보고하셨듯이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국가적으로 또 이 산업 진흥을 위해서라도 적극 법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진 전 위원장께 제가 법안1소위를 빨리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렸는데요. 최형두 간사님께도, 위원장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1소위 열어서 빨리빨리 법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법과 디지털포용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저는 AI법과 디지털포용법은 빨리 국회가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가 AI 기본법을 통과시켜 줘야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관련 법들이 정부 입법 혹은 각 위원회별로 올라가서 통과됩니다. 그래서 이게 산자부와 문체부의 의견이 있습니까만 AI 기본법은 과기부가 중심으로 진행하는 우리가 낸 법안으로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산자위는 알아서 산자위 관련된 AI 관련된 법안 내도록, 문체부는 또 마찬가지로 문체부가 할 수 있는 법안들 관련된 것 내도록 해 주시고 그것 오래 시간 끌지 않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형두 간사님께서 지난번에 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산자부하고……

○최형두 위원 예, 지금 법사위랑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그 이후에 문체부가 다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최형두 위원 정부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최형두 간사님이 움직여 주시면 빨리 통과될 것 같습니다.

연내 통과가 과방위의 목표입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9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 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0.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10시33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30항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참고인들, 증인들 들어와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위원장 최민희 예, 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박민규 위원 1분이면 됩니다.

계엄 동조와 관련된 자료 요구를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12·3 불법계엄과 친위 쿠데타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최근 3년간 핸드폰 기기변경 내역과 변경 일시, 변경 후 단말기 모델명이 정리된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또는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송미령 농림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 중기부장관, 배석한 조태용 국정원장도 최근 3년간 핸드폰 기기변경 내역과 변경 일시, 변경 후 단말기 모델명이 정리된 자료를 방통위 그리고 과기부 모두 오늘 오후 5시까지 위원장께 제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2분 드리세요.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먼저 중인 불출석과 자료 미제출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의 언론 자유가 얼마나 위기에 직면했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KBS가 계엄방송국으로 전환할 준비를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상황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과 통신의 자유, 공공성·공익성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란의 위기상황에서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추궁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박민 KBS 전 사장의 경우에 KBS 사장직 임기가 12월 9일 자로 끝났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KBS 사장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책무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선봉에 섰던 류희림 위원장이 과연 할 수 있는 변명인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불출석 사유서였습니다.

KBS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가 발생한 12월 3일과 4일 여의도 KBS 사옥 앞에 군용차량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군용차량이 주차된 시간과 떠난 시간 그리고 군용차량 주차 위치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박민 KBS 사장, 최재현 KBS 통합뉴스룸 국장과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 간의 통화 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당일 대통령 특별담화와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특보 편성이 결정된 시간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 KBS는 여러 가지 자료 요구에 계속해서 불성실하게 응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KBS에 자료제출을 거듭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KBS는…… 뭐 박민 사장의 경우는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장범 사장은 빨리 출석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제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2분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지난번에, 12월 3일 저녁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선배님들 참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 마산에서 일이 있어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저더러 빨리 달려오라고 전화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 또 박민규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전화는 안 했지만 당연히 올 것으로 생각해 줬던 김현 간사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신성범 위원을 비롯해서 모두 그날 밤에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지난번 우리 소위 과정에서 동료 위원들끼리 이 문제를 둘러싸고서 좀 지나친 언사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최형두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1소위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법안 의결 때 참여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참여했는데 좀 다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오후에 또 현안질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날 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당시에 계엄령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사태의 지금 후파가 큽니다. 그게 그 당시에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런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질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국회가 지금 신속하게 계엄의 뇌관을 제거해서 민주주의 복원 능력을 보여 줬듯이……

지금 계엄령 사태는 한 번 난 뒤에 국가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모든 기관에서 총력을 다해서……

지금 자칫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통과될 법안이 좀 지연됨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규제에 관한 문제들을 해서 계엄 사태 이후에 어떻게 현 정국을 빨리 안정시키고 또 산업 진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방위가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는 그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비겁하다고 느꼈습니다. 다 사표 낼 심정으로 막았어야지요. 그런데 최형두 간사님이 그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질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황정아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각 1분씩 드리고 간사님께 2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작합시다.

황정아 위원님 1분 하시고 한민수 위원님 1분 하십시오.

1분씩 드리세요.

○황정아 위원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반국가 내란범죄의 전말이 매일같이 새롭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설마했던 일들이 이제는 실체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올 초 여름부터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고 계엄 당일에 사령관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문 부수고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국현문란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실미도’ 영화에나 등장했던 북파공작원(HID)가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이 할 짓거리입니다?

내란을 통치행위로 주장하는 윤석열이나 옹호하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나 정상적인 인간이 맞습니까? KBS를 계엄 준비 방송으로 활용한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 대통령실이 KBS에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실제 계엄 당일에 KBS 보도를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과 계엄군 입장을 받아쓰기한 수준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는, 지난 6일 금요일에 오후 3시 경 과방위 조사관이 KBS를 방문했는데 안내데스크에서 증인출석 요구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 직원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과방위 조사관이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서 결과적으로 증인출석 요구가 제때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그 3일, 12월 3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안내데스크 통화 녹취록과 CCTV 촬영본 제출 등과 함께 계엄 사태 진상 규명 관련 자료를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란의 공범자들에게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 처단만 받을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 오늘 자리에 오지 않은 국민의힘 위원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 하면 본인이 잘한 얘기인 줄 알까 봐 제가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위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는 참여를 했어요. 지금까지 탄핵 반대 입장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이 뜯금없이 뭐라고 했습니까? 차마 제 귀를 의심할 정도의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계엄보다 더한 짓을 할 사람’. 뭐 하는 짓입니까? 윤석열 씨에 의해서 지금 현정이 문란해지고 국헌이 깨지고 대한민국이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 계엄을,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했는데 그걸 옹호하다 못 해서 제1야당 대표를 또 공격합니까? 이것은 어제 윤석열의 담화와 벼금가는 행동입니다.

어제 담화가 뭐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 국민들을 또 편 가르고 선동질하고 거짓말로 점철된 담화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본인이…… 저는 그래서—참 1분이 짧아서 그러는데요—적어도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 정도 된다면 정말 어떤 게 진실인지 그 정도는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전형적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전형적으로 편 가르고 국민들 선동하고 한 줌 거리밖에 안 되는 자기 진영에서 인기 얻어 보려고 하는,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그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에요?

우리가 선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서를.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혼란한 틈을 타 가지고 이따위 짓들을 합니다. 윤석열 못지않아요, 이게.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 들이 아니지요, 일단. 위원장님, 저는 이런 국회의원하고 같은 상임위를 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저희가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신상발언 좀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예, 노종면 위원님.

1분 드리세요.

○노종면 위원 지난 저희 법안심사소위에서 있었던 일의 주요 당사자가 저이기 때문에 최형두 간사님 말씀에 한 가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란 사태를 막는 데 동참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의 책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하고 함께 자리를 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빴겠지요.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희 위원이 뭐라고 발언을 했냐 하면 우리가 그 와중에 법안심사를 한다고 하는데도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선빵을 날린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국회의원이 정상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흥분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박충권 위원이 일어나서 다짜고짜 반말을 하고 제게 닥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안심사소위가 과행이 됐던 거예요.

○김현 위원 과행 아니에요.

○노종면 위원 퇴장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 저도 1분만……

○김현 위원 여기까지 하시지요. 간사님, 제가 발언 안 하는 걸로 갈음해 주세요.

○최형두 위원 1분만 주세요, 1분만.

○김현 위원 제가 발언을 안 하는 걸로 갈음하시라고요.

○최형두 위원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에 대한 명예 문제이니까.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김현 위원 현안질의하시지요. 들어가시지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예, 현안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최형두 위원님이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뭔가 말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신상발언을 대신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분 동안만……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하라고 하세요, 본인이.

○최형두 위원 1분만, 1분만.

○위원장 최민희 본인이 오면 1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과방위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제가 좀 필요한 노력들을……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최형두 간사님도 의사에 협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이렇게…… 1분 드리고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하세요.

○최형두 위원 동료 위원들을 상대로 내란에 동조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용납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 다 그날 국회로 달려오려고 그랬고 표결에 참여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내란을 방조하고

동조한 것처럼……

그리고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상황이 다 나와 있지요. 서울경찰청장 또 지금 어디입니까, 경찰청장에 보면 한 30분 동안 출입을 허용하다가 봉쇄하는 바람에 한 50명 정도가 못 들어와서 당사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동료 위원들끼리 우리 국회가 함께 참 신속하게 해서 계엄을 풀었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서로가 지금 이 위기 상황에 힘을 합쳐야 될 상황인데 그건 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편 가르기를 하면 우리 상임위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언론 통제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고요. 그런데 이와 관계없이 한 위원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심하게 발언하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저희가 12월 3일 날 있었던, 현대 국가에서 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2소위가 열렸고, 저는 2소위의 위원들과 논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빚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 자리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두 번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현안질의에 들어갔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법 관련해 가지고 상임위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는데 김태규 직무대행께서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답변에도 보면 이게 대통령 소속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의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질의할 때 얘기하겠지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에 충실히 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자료제출 요구 충실히 해 주십시오.

우선 증인과 참고인 소개 후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각 기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주십시오.

증인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증인과 참고인은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 과기부장관입니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입니다.

참고인입니다.

박상현 KBS본부노조 본부장입니다.

박현광 뉴스토마토 기자입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 본부장입니다.

노태영 KBS 기자협회장입니다.

(인사)

일부 참고인은 현안질의 중에 출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9명 중에서 7명이 불출석하였으며 불출석사유서는 7명이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의 처벌 여부는 처리 여부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 결정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질의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 선서합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 증감법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유상임 장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상임 장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상임**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별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증인 유상임

증인 김태규

○**위원장 최민희** 다음은 현안보고 차례입니다.

유상임 장관 나오셔서 짧게 계엄과 관련한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상임** 현안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현안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저는 사이버 공격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통신망 관리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게 혼들림 없이 업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디지털 장애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차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중요 통신사업자,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들과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24시간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와 뉴스 등 일부 서비스에서 트래픽 급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으나 서버 증설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상화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홈페이지와 스미싱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사이버 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에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해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장애 등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공백 없이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1차관 주재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재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애 등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디지털 사업자와 함께 상시 대응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디지털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법에 따라 국민 이용률이 높은 대형 디지털사업자에게 장애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24시간 유무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한 상황 관리와 복구 지시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정부부처 및 주요 기관 사이트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 PC백신 기업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서버와 감염단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화량 급증, 통신시설 파괴 등 통신자원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항을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근거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대행 나오셔서 깨끗이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태규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현안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상계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통위는 전시가 아닌 평시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과 해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에 계엄과 관련하여 특별히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연락관 파견 요청이 있었으나 파견하지 않았고 계엄 관련 상황 모니터링 중에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상황 종료 후 12월 4일 아침에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각 국에서 평소와 같이 소관 업무를 잘 챙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안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엄 조치와 관련해서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조처나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오전 9시경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계엄이 해제되는 것과 동시에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반적인 업무 처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민주노총 탄핵 독려 관련한 콘텐츠 삭제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그것은 그 전날 있었던 일입니다.

○**김현 위원** 뭐가 전날이에요?

○**김우영 위원** 그러면 예비네, 예비행위.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내란 예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아, 전날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현 위원** 12월 4일이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예, 4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거 안 했어요, 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그건 했지요.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까?

들어가세요.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안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답변 포함하여 7분입니다.

○**황정아 위원** 유상임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장관께 윤석열 정부의 과학정책에 대한 질타를 했을지언정 장관의 철학과 본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관의 서면질의 답변을 보면서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싶어서 정말 자괴감이 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하고 계엄군이 군홧발로 국회 본청을 짓밟는 것이 생중계되었는데도 위헌임을 말하지 못하겠다는 장관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장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국회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했습니까? 국회가 대한민국에서 척결되어야 하는 반국가 세력입니까? 광란의 칼춤을 추는 건 내란수괴 윤석열 아닙니까? 답변하시지요.

○**증인 유상임** 글쎄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정아 위원** 끝까지 비겁하시네요. 저와 함께 R&D 예산 추가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자,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 하셨던 장관이 대한민국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회와 함께 뛰었던 과기부 공직자들 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반국가 세력의 동조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관도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계엄의 헌법 법적 절차적 요건. 헌법 제77조 계엄의 요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12월 3일 계엄령이 발표된 그날 밤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증인 유상임** 없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러면 춘전시 상태였습니까?

○**증인 유상임** 그렇지 않습니다.

○**황정아 위원** 실체적 요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맞지요?

○**증인 유상임** 제 개인적인 판단을 꼭 얘기해야 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황정아 위원** 다행입니다.

또한 헌법에서 조차 국회의 권능을 계엄을 통해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유상임** 예.

○**황정아 위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독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통해서 견제하라는 삼권분립의 정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지요? 그런데 서면답변에서 '그 위헌 여부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의 공직자 맞습니까?

○**증인 유상임** 제가 사법적 판단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제는 누구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위헌에 위법인지 불법 여부는 누구도 개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계엄령 해제 국무회의 때 직접 용산으로 가서 참석을 했고 이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해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의견 개진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유상임** 예, 그것은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니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참 우습게, 행안부가 그제 공개한 자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국무회의 관련 대통령실 회신자료에는 왜 '국방부장관 제안설명 외에 발언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간 좀 보시지요.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회의 시작 시간이 12월 4일 4시 27분, 종료 시간 4시 29분…… 단 2분짜리 회의였어요. 단 2분, 고작 2분짜리 국무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의견을 개진하셨습니까?

○**증인 유상임** 저게 어떻게 저 시간으로 나와 있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저는 3시 반경 도착해서…… 지금 여기 회의가 몇 분간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대통령께서 해제 회견을 한 그 근방의 시간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1시간 내내 국무위원들은 성원이 안 돼서 조금 기다리기도 하고 또 정식 의제를 만드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황정아 위원** 시간표를 한번 보시지요.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12월 4일 1시 1분, 계엄 해제 의결을 하면 사실 즉시 계엄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시 30분에 합참 지하벙커에서 윤석열, 박안수, 김용현 등이 따로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유상임 장관이 국무회의에 오라고 연락을 받은 게 2시 30분, 그리고 3시에 박안수가 계엄사 참모진들 구성을 위해서 육군본부부장들 서울로 이동을 지시하고 유상임 장관이 용산 도착한 게 3시 30분.

자, 계엄 해제 의결이 즉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이나 빈 다음에 연락을 받았다, 그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3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는데 아까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계엄 해제 국무회의 개최는 4시 27분.

1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슨 의견을 어떻게 개진을 했길래 2분 뒤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종료가 되었을까요?

국무위원들이 이제사 자기네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누군가 계엄 해제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그 자리에서 누군가 계엄 해제를 반대했을까요?

○**증인 유상임** 그게 아니고 국무회의를 심의 의결하려면 성원이 되어야 되는데 성원이 되지 않아서 기다린 시간이었고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에서 이 의결을 해야 되는데 성원이 되지 않아서 기다린 것뿐입니다.

○**황정아 위원** 뒤는 기다리느라고 그랬다 치고 앞에 1시간 30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계엄 해제 의결을 즉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시간 반이나 따로 별도로 밀실에 모여서 무슨 모의들을 하셨을까요? 혹시 제2차 계엄에 대해서 밀실 모의를 하신 게 아닌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증인 유상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정아 위원** 본인이 도착하지 않았던 시간인데 어떻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십니까?

○**증인 유상임** 지금 3시 반에서 4시 반이 아니라 어느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정아 위원** 앞부분에 1시간 30분 동안 비어 있는 시간에도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무위원들한테 이렇게 늦게 연락이 갔을 리가 없어요. 국무위원인 사람이 계엄을 막지 못한 것부터가 국민의 분노를 피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께 속죄하는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너무 늦지 않게 양심 고백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란의 은폐에 가담해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누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반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란수괴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답변하시지요.

○**증인 유상임** 지금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군 정보기관이 방통위에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4일 새벽, 세 차례에 걸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연락관을 보내라는 전화는 ‘02-748-땡땡땡’ 이 번호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걸려 갔습니다. 새벽 1시 15분, 새벽 2시 5분, 마지막 전화는 새벽 3시 20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 차례의 전화 가운데 한 번은 국군심리전단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군심리전단, 이 국군심리전단에 대한 대통령령에 보면 심리전단의 임무가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적 또는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그리고 ‘점령지역 등에 대한 선무 심리전 지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보고, 대한민국을 점령한 것으로 보고 계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특히 시간에 주목해 주십시오. 제일 빠른 전화가 새벽 1시 15분경입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직후예요, 2시 5분도 그렇고. 마지막 전화는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지 무려 2시간이 지나서입니다. 이건 계엄 세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도 불구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전화를 직접 받은 방통위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직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기조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영관 기조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한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연락을 직접 받은 직원으로부터 각각 세 차례 나눠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저는 첫 번째 전화가 온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종면 위원**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두 번째, 세 번째 전화가 왔다는 것은 아침에 출근 해서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전화를 걸어 온 곳이 어디라고 하던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전화를 받은 저희 비상계획담당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누구를, 몇 명을 어디로 보내라고 했다던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그냥 보내라고만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침에도 똑같은 보고를 하던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전화 통화한 분은 물론 좀 놀라셨겠지만 그래도 훈련된 분이잖아요, 그런 연락에 대비하는 분이고?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그래서 나중에 어디서 전화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서 확인을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첫 전화에서는 그랬다 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전화까지 그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물어봤대요, 어딘지?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그러니까 확인을 못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연락관을 보내라는데 ‘누구를 보낼까요? 어디로 보낼까요?’ 그걸 안 물어봅니까? 기조관은 그런 보고를 듣고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저희는……

○노종면 위원 방통위 전화 시스템은 걸려 온 전화번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전화번호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번호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왜 국회에서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해요? 나머지 전화번호 왜 안 알려 줍니까, 우리한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저는 번호 3개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3개 다 줬다고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노종면 위원 김태규 대행에게 보고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아침에 출근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 중요한 문제를 아침에 보고를 해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저희가……

○노종면 위원 비상연락망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그러니까 저희가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의결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계엄령이 해제될 것으로 보고……

○노종면 위원 아니, 기조관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그 시점에 계엄 해제를 받아들일지 말지 합참 병기에서 숙의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 이후에 몇 시간 동안 계엄이 공식적으로 해제가 안 됐는데 그런 안이한 판단을 해요, 고위공직자가?

김태규 대행한테 왜 보고 안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이 해제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해외에 나가 있던 조성은 사무처장한테 보고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노종면 위원 해외에 나가 있으면 계선에서 벗어납니까? 판단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그 당시, 제 기억에는 그 상황을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방통위는.

혹시라도 김태규 대행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이런 걸 보고하면 보내라고 할까봐 스스로 덮은 거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그렇지 않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종면 위원 그냥 직무를 안이하게 수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안이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군 정보기관에서 계엄 상황에 그리고 이 계엄이 내란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김태규 대행은 앞서서 이런 보고, 이런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거짓이 아닐 정도로만 어설프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방통위에서 쉬쉬했던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만약에 계엄령이 해제 안 되고 계속 지속됐으면 어느 순간에는 제가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혹시 노종면 위원님, 비상계획관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노종면 위원 당연히 불러야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김태규 대행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화를 받은 분이 비상계획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비상계획관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증인 김태규 지금 청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지금 즉시 출발하면 12시 좀 넘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계획관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의결……

○노종면 위원 비상계획관이 맞아요? 혁신기획담당관이지요, 정확한 명칭이?

○위원장 최민희 예, 지금 즉시 혁신기획담당관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아닙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비상계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비상계획관…… 잠깐만요.

그 비상계획관이 군 출신 1명씩 배정된 그분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맞습니다. 그래서 비상계획관이 전화 받은 거 맞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비상계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비상계획담당관이 맞습니다. 비상계획담당관 출석하도록 해 주세요.

○노종면 위원 같은 사람이라네요.

○위원장 최민희 현재 같은 역할을 맡고 있어요?

○노종면 위원 혁신기획담당관실의 비상계획관.

○위원장 최민희 지금 오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조성은 처장, 빨리 연락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위원장 최민희**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규 위원**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유상임 장관님께 질의하기 전에 몇 마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한 것은 물론 단순 관여 행위도 모두 정범으로 규정합니다. 즉 내란죄는 통상 방조범인 단순한 관여 행위도 정범으로 엄히 처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누구보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이끌 의무가 있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나 바꾸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에 있으라며 수차례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전후 상황을 볼 때 추경호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 불성립을 위해 내란수괴와 모의했음이 유력합니다.

○**최형두 위원** 잠깐 위원장님, 이건 중대한 사실 왜곡입니다.

○**박민규 위원** 다행히 야당 의원들과 양심적인 국힘 의원들의 결단으로 계엄 해제의 결이, 여기 계신 신성범 의원님과 박…… 안 계신 두 분의 의원인데, 18명 의원들의 결단으로 계엄 해제의결이 이루어졌지만 추경호 의원의 행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 불법계엄 내란 횡책을 도모한 것입니다.

○**최형두 위원** 박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박민규 위원** 또한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침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본회의를 소집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두 차례 통화하여 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적으로 막았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점령 시간 확보를 위해 내란죄를 공모한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91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바로 국회입니다—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권능행사는 해제 표결안입니다—불가능하게 한 내란 범죄입니다.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각자 역할 분담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내란행위를 공모 및 실행한 것으로 윤석열은 형법 제87조제1호 내란의 우두머리이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죄의 공동정범입니다.

여기에 더해 추경호 의원은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집단 퇴장을 지시하며 같은 시간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의 투표권과 회의장의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현안질의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박민규 위원** 이는 국회법 제114조의2에 명시하고 있는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자유투표 방해죄이자 국회법 148조의3에 명시된 회의

장 출입 방해 금지입니다.

○**최형두 위원** 박 위원님,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고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동료 의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박민규 위원** 이렇듯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내란죄를 범하고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실해서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현재 발의된 상태입니다.

2018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내란죄입니다—‘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이 이뤄지면 내란죄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성립을 방해한 공모 관계인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님은 2013년과 2014년에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압력밥솥을 폭탄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모여 내란을 획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위원의 발언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하려 했다. 압력밥솥조차도 해산인데 국민의힘이 만약 윤 대통령에게 동조하면 정당 해산을 안 당하라는 법이 있겠나, 만약 이를 동조하고 가볍게 국민의힘이 통 치고 지나간다면 개혁신당이 먼저 국민의힘에 정당해산심판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누가 봐도 2014년 통합진보당보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에 부화뇌동한 국민의힘이 수십, 수백 배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죄도 중할 것입니다.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바라지 않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나친 발언입니다, 이건! 그만하세요, 이제.

○**박민규 위원** 설사 생각과 지향이 다르더라도 논쟁하고 토론하며 서로 성장하는 의정 활동의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제대로 된 현안질의를 하세요. 이렇게 일방적인 비방을 하고 있습니까?

○**박민규 위원** 그 끝은 정당 해산일 수 없기를 바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향적 전환을 제안드리며, 유상임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2월 3일 오후 10시경 열린 국무회의 같은 회의에 참석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온 것입니까, 왔는데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알았지만 일부러 불참한 겁니까?

○**증인 유상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렇다면 만약 비상계엄 의결 같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대통령을 뭐라고 설득했을 것 같습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우니까.

한덕수 총리는 12월 11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12월 3일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흡결이 있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규정상 국무위원에게 국무회의록을 송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비록 참석하지 못했지만 벌써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그 12월 3일 국무회의 회의록 송부받았습니까, 장관님?

○**증인 유상임** 못 받았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렇다면 아까 황정아 위원의 질의에서 답변한 것처럼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는데, 그때 의견을 나눴다고 했는데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증인 유상임** 국회에서 해제를 하고 저는 3시 반에 들어가서 조속한 우리 의결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81년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서명, 관보제재 요청 문서입니다.

불법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군부독재도 계엄령의 최소한 절차를 지켰습니다. 친필이나 전자서명 등 방식은 다양하지만 계엄령 해제 의결했던 12월 4일 국무회의 당시 장관은 이러한 날인을 한 바 있습니까? 있습니까?

○**증인 유상임** 해제 시에 날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결을 한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박민규 위원** 이처럼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간사님께 2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오늘 유감입니다.

오늘 이 질의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또 관련 기관을 상대로 계엄령 사태 이후에 지금 여러 심각한 사안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를 둘러싸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돌연 우리 당의 전 원내대표를 무슨 내란 공범으로 단정을 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밝혔듯이 저희들이 다 통신기록이 있습니다. 원내 행정국에서 의원총회를 하겠다, 이쪽에 와 달라, 다 기록이 있는데 그런 기록 사실도 최소한 확인하지 않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유감스러운 일을 떠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명예 혐손이자 모독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을 거론하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미 대법과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그것은 정당 해산 사유에 맞다고 해서 해산된 정당이고, 이걸 두둔하시려는 의도는 아니겠지요?

그리고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절에 통합진보당의 국가 전복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된 사실입니다. 우리 비상계엄 사태를 따지는 상황에서 돌연 통합진보당의 행위가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언급된다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그날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경찰청장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11시인가 11시 반 사이에 잠깐 열렸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이 들어올 수 있었고 또 그 뒤로도, 저도 여기 존경하는 정동영 선배 위원님과 함께 월담을 하고 이준석 위원님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했습니다만 그 시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의원들을 예사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월담하기가 높은, 펜스가 꽤

높은 위치고, 그 시기에 우리도 다 그것 어떻게 할까, 어디서 모일까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을 보시지도 않고 그냥 몰아치기로 ‘안 온 사람들은 내란죄 공범이다’ 이런 아주, 정말 동료 위원으로서는 예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최형두 간사님의 말씀은 일단 이번 사태가 내란이며 그리고 이게 잘못됐으며,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죄의 공범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시니 지금 이 비상계엄이나 내란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내란 상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최형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현안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당은 내란죄를 처단했던 정당입니다. 내란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사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최민희 1분 드리세요. 왜냐하면 이건 최형두 간사님이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1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참 이것 또 무슨……

이 문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내란죄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재판과…… 저는 모든 문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 정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내란죄를 처단한 정당이라는 점, 내란죄라는 것은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비상계엄 사태의 국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국내외 신인도 문제와 아울러서 굉장히 외교·안보적으로도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국회가 좀 논의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계엄의 뇌관을 신속하게 풀었던 만큼 슬기롭게 풀어야지 돌연 사실과 다르게 우리 동료 의원을 무슨 내란의 공범이라는식으로 공격을 이렇게 해서는 국가 위기 수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걸 계기로, 오히려 비상계엄을 계기로 정적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오해를 받고 싶으신 겁니까?

○위원장 최민희 어쨌든 이……

○박민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이 상황을 신속하게 종식시켜야 한다, 잘 해결해야 한다, 저는 그 말만 들어오는데요.

아니,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중요한 사실관계가 있어서 확인을 좀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일단 박민규 위원님께, 어쨌든 본인의 말에 대해……

○노종면 위원 저한테 양보하셨는데요. 질문……

○위원장 최민희 양보하셨어요?

○박민규 위원 안 한다고는……

○위원장 최민희 2분 하십시오.

○박민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최형두 간사님이 하신 말씀은 제 발언을 왜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간사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해제 결의안을 투표하자고 다그쳤지만 의장님은 여야 간 협의를 원했는지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했는지 모르지만 추경호 의원의 전화를 받으면서 자연스런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통화한 사실은 맞습니다.

○**최형두 위원** 계엄 문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민규 위원** 또 하나, 추경호 의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말은 내란죄라는 것은 공모의 관계 성립에 매우 폭넓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모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인지했어도 공모 관계가 된다는 대법원 판시를 설명드린 겁니다,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죄 처벌을 바라기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이 내란죄를 끝내는 데 있어서 중차대한 역할을 갖고 계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이자 국민의힘 충진 의원님께서 이러한 큰 문제를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이 내란 상황을 종료하기를 원해서 언급한 거고.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 관련된 언급은 이 자리에 계신 이준석 위원의 발언을 옮긴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 국회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계엄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이미 150명을 넘긴 순간은 굉장히 이런 시간이었지요. 190명까지 기다린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여기까지 하시지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타이머 시작하기 전에 박상현 KBS본부노조 본부장님 그리고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 본부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호찬 본부장님도?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이 공들여 쌓은 탑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민지배와 전쟁, 오랜 군사독재 정권을 종식하고 우리가 쟁취했던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하루하루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산소처럼 당연하게 누려 온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만일 우리 국회가 국민 여러분의 혌신과 노력 덕분에,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못했다면, 만약 비상계엄과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박장범 KBS는 쿠데타 세력에 대한 찬양보도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류희림 방심위는 비판언론을 사냥하고 재갈을 물렸을 것입니다. 이진숙·김태규 방통위원회는 쿠데타 정권의 언론 통제 컨트롤타워로 기능했을 것입니다. 지나친 생각이라고 보시는지,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밝혀지고 있는 치밀했던 내란의 전모와 계획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여온 행태를 생각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도 복귀를 해서 쿠데타 정권의 언론 통제에 앞장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에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12월 3일과 4일 여의도 KBS 사옥 앞에 저런 군용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 있었는지, 그리고 CCTV 영상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KBS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현 본부장님, 군용차량이 KBS 앞에 저렇게 서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참고인 박상현 저희도 계엄이 선포됐던 날 밤에 회사에 있으면서 계엄군이 회사에 올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회사 주변을 좀 돌아다니면서 보았는데 저희들이 직접 발견하지는 못했고 다른 분이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는데 저희는 의심하는 것이 사실 저 위치가 회사 정문이라서 국회 정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 자리에까지 군용 차량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회사에 전달할 것이 있어서 오지 않았을까……

○이정현 위원 KBS 장악을 위한 준비 절차가 아니었을까……

○참고인 박상현 예,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성명을 통해서도 저 사진을 공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라고 사측에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못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호찬 본부장님.

○참고인 이호찬 예.

○이정현 위원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장악 대상기관에 MBC가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MBC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기감은 어땠습니까?

○참고인 이호찬 당시에는 온 국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내란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들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포고령에 모든 언론은 계엄군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계엄군의 진입에 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계엄의 상황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려 낼까, 전 보도국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출근해서 제대로 알리는 작업에 차수를 했고요. 저희 노동조합 집행부도 밤에 긴급히 조합사무실로 와서 회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MBC가 계엄군의 진입 대상인지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그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 정권이 MBC를 왜 그토록 집요하게 공격했는가를 또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수많은 언론사가 있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는데 MBC가 주요 타깃이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참고인 이호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씨의 야당에 대한 경고,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 이것에 사실 MBC는 또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사유도 열토당토않지만. 결국에는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그 수많은 시도에도 MBC 딱 하나 장악하지 못하고 했던 것들을 비상계엄을 통해서 마저 장악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간 방통위를 비롯해서 온갖 방송 관련기관에 윤석열의 측근을 그토록 무리해 가면서 앓히려고 했던 이유도 언론을 장악해서 비상계엄을 성공하기 위한 목표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고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에서 오늘까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고성국 씨의 발언들입니다. 물론 이게 KBS 방송에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한 얘기입니다만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수괴라는 누명을 덮어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우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끊임없이 편향적인 방송을 이끌어 왔던 고성국 씨인데 결국에는 오늘까지만 하고 방송을 그만둔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공영방송 KBS에서 이런 사람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박상현 본부장님?

○**참고인 박상현**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사들 바꾸고 사장 바꾸고, 당시 전임 박민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다음에 저런 극우 유튜버를 공영방송 진행자로 내리꽂은 겁니다. 저희들은, 언론노조 KBS본부는 고성국 씨가 진행을 할 때부터 수차례 저런 사람이 KBS 공영방송에서 어떠한 얘기를 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고성국 씨 퇴출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이제서야 받아들여진 것이고 결국은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이정현 위원** 됐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님, 저런 극우적인 시각을 드러낸 사람이 KBS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태규** 저는 지금 이 영상도 처음 보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어요?

○**증인 김태규** 예.

○**이정현 위원** 저런 발언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공영방송의 공정성 또 객관성 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위해를 가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방통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방통위원회이고 그 역할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 아닙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증인 김태규** 개인 유튜버가 유튜브상에서 한 얘기를 제가 평을 하는 것은 그리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정현 위원** 개인 유튜버가 아니라 공영방송 KBS의 프로그램 진행자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런 사람이 다시는 공영방송, 상업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편향적인 사람이 진행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정도는 분명하게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증인 김태규** 달리 의견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할 얘기가 없습니까?

○증인 김태규 예.

○이정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유상임 장관하고 김태규 직무대행한테 간단한 질문, 유 장관부터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내란 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유상임 내란 사태 여부는 사법 당국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위헌은 동의하십니까?

○증인 유상임 개인적으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위원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번 소위 때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도 밝힐 수 없습니까?

○증인 김태규 예,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민수 위원 그만하세요. 총리가 나와서 국민들 상대로 네 번씩이나 허리를 숙여 가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만두세요. 그 정도 말도 못 하는 사람이 무슨 방통위 직무대행을 합니까. 국민들한테 부끄러워야지.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김태규 대행부터 좀, 물어볼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것 한번 보세요.

어제는 45년 전, 1979년 전두환 신군부가 12·12 쿠데타를 한 날입니다. 그날 윤석열 씨는 대국민 담화라는 걸 발표했어요, 29분짜리. 저는 한마디로 광기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봅니다. 그걸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이 방에서, 전 국민 중에? 그런데 지상파 3사를…… 그냥 제목만 한번 보십시오. KBS ‘야당이 현정질서 파괴……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 끝까지 싸울 것’, SBS ‘극우 괴담과 판박이 논리’, MBC ‘망상의 29분’.

저는 김태규 직무대행은 역사에 죄를 지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의 법정이 아닌 현실의 법정에서도 저는 죄값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진숙 씨와 함께 둘이서 불법적으로 똑딱똑딱 해서 KBS를 망쳐 놓은 결과입니다, 저게. 모든 국민이 참을 수 없는, 거리 한번 나가 보세요. 그게 정파적인 사람들인지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인지 한번만 나가 보십시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윤석열 씨가 무슨 짓 하는지 몰랐던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그 실체를 알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핵해, 탄핵해’를 외치고 있습니다. ‘체포해, 체포해’.

적어도 국민의 혈세로, 세비로 국정을 하는 사람들이면 그 국민들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KBS 이사진이 임명한 작은 파우치의 박장범, 그래서

KBS가 저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과 동떨어진 보도를 하면서 그 알량한…… 아직도, 아직도 윤석열 씨 편을 듭니까? 그러면 좋습니까? 뭐가 떡고물이 떨어집니까? 정말 한심하다 못해서 제가 한 말씀 하고요.

유상임 장관님, 12월 3일 날 계엄 선포 TV 통해서 봤습니까?

○증인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어디서 TV를 보셨습니까?

○증인 유상임 집에서 봤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것을 본 다음에 누구랑 연락하신 것 있습니까?

○증인 유상임 예, 우리 과기정통부 내의 고공단, 뭐 기조실장, 차관님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 과기부 내의 분들하고 얘기하신 거군요. 그러면……

○증인 유상임 예, 뿐만 아니라……

○한민수 위원 국무위원들이나……

제가 묻겠습니다.

○증인 유상임 국무위원들한테도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한민수 위원 총리하고도 통화했습니까?

○증인 유상임 통화가 안 돼서 그렇지 통화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다른……

○한민수 위원 대통령실에, 대통령과는 통화 못 하셨지요? 했습니다, 아니면 시도를 했습니다?

○증인 유상임 아니요, 제가 모릅니다.

○한민수 위원 번호를 모르시는 건가요?

○증인 유상임 예.

○한민수 위원 대통령실 누구, 비서실장이랄지 정무수석이랄지 통화하신 적은 없으세요?

○증인 유상임 용산 쪽하고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래요?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언제 접하셨습니까?

○증인 유상임 포고령 발표할 때 TV로 봤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 포고령 보고도…… 아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건 위헌 소지가 아니고 명백한 위헌이지요. 우리 헌법도 그렇고 계엄법에도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당활동 못 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불법입니다. 위헌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거기 다시 한번 포고령 보십시오. 정상적인 대통령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출석은 언제 요청받으셨습니까, 시간이?

○증인 유상임 새벽 2시 반경 받았습니다.

○한민수 위원 2시 반에 연락을 받은 겁니까?

○증인 유상임 예.

○한민수 위원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국회에서 190명의 의원들이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통과시킨 게 1시 1분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유상임 예, 그것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장관께서 연락받기까지는 거의 2시간 30분 가까이 걸린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장관만 특별히 늦게 받은 겁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까?

○증인 유상임 저한테 그 시간에 연락이 온 사유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12월 3일 이후에 윤석열 씨나 김용현 씨, 한덕수 총리와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유상임 발표 후 또 제가 참가하기 전까지 통화를 할 수 있었던 분은 유인촌 장관님과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님인데 시간이 상당히 늦은 상태, 그러니까 10~11시 그 근방에 통화…… 아마 최상목 장관님은 한 12시 가까이서 제 전화에 대한, 받지를 않았던 건데 저한테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지금 기억하세요?

○증인 유상임 유인촌 장관님은 저와 똑같이 연락을 못 받으신 분이니까 했고……

○한민수 위원 잠시만요.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이어 가야 되는데, 이것 하나만 물어볼 게요.

유 장관은 휴대전화 기기 변경이나 유심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유상임 저요?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3시간 전에 윤석열이 경찰청장을 만나서 장악 대상이 담긴 A4 용지 1장을 줬어요. 10곳이 있는데 그중에 MBC가 포함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도 MBC를 넣은 이유는 어제도 윤석열, 내란수괴 윤석열 담화에서 봤지만 거의 극우 유튜브 수준의 사고를 하고 있어요. MBC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MBC를 장악하려고 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79년 10·26 나고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이 문건이 당시 보안사에서 언론을 장악했던 문건인데 여기 보면 보안사 준위 이상재가 언론반장이 돼 가지고 모든 언론사를 장악해요. 그때 MBC에도 군이 투입돼서 MBC를 장악하고 보안사 요원들이 서울시청에 상주하면서 MBC의 모든 뉴스는 가서 사전 검열을 받고 보도지침에 의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 시절로 회귀를 꿈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 그래서 MBC를 장악 대상에 넣었고 과거에, 이번 사건도 방첩사가 주도했는데 과거 보안사 여기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이 12월 3일 전후, 그날 당일이나 며칠만의 일이 아니고 사전에 치밀히 오랜 기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부터 준비를 했다. 추미애 의원이 폭로한 방첩사의 계엄 준비 문건이 2023년 3월이에요, 3월. 이때부터 준비됐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가장 먼저 한 게 방송장악이에요, 방송장악. 방송장악은 작년 5월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밀어내고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계엄, 내란 스케줄과 방송장악 일정이 저는 같이, 저기 보시면 같이 맞물려서 갔다고 생각해요.

2023년 7월에 방첩사에서 계엄사 준비 문건을 만들고 그 한 달 뒤 8월 달에 KBS하고 MBC 장악을 시도했는데 KBS는 남영진 이사장을 밀어내고 박민 사장이, 낙하산 사장이

입성하는 데 성공했어요, 11월에. MBC는 이사장을 바꾸지 못해 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4년 3월에 충암고 3인방이 계엄을 또 논의했어요. 그래서 이 일정이 죽 가고 그 와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24년 7월 31일 날 이진숙과 저기 김태규 직무대행이 저지른 언론장악 쿠데타예요. 저는 7월 31일에 대해서 전부터 연성 쿠데타라고 정의를 내려 왔어요. 이번에 보니까 딱 맞았어요. 그날 군사작전 하듯이 7월 31일 하루 동안 KBS·MBC 이사를 다 바꾸고 이걸 통해서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 계엄 연장선상에 이게 있었고 거기에 이진숙과 김태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진숙과 김태규도 내란의 공범자고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수사 중이지만 과거 언제부터 치밀히 준비됐는지, 이제 수사를 할 텐데 이진숙과 김태규도 수사 대상이고 우리 과방위에서 내란범으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 다.

이것은 제가 암만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도, 명확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날 그렇게, 7월 31일 날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는데 계엄 사태가 터지고 이런 내란 사태가 터진 다음에 복기해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태규 직무대행, 어떻게 생각해요?

○**증인 김태규**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 모든 국무위원들이 와서 사과하고 인정을 했어요. 여기 김태규 직무대행은 계엄에 대해서도 입장을 못 밝혀요. 그게 동조자라는 거예요. 동조자고……

○**증인 김태규** 저에 대한 내란이나 쿠데타 표현은……

○**이훈기 위원** 물어보지 않았어! 조용히 해. 물어보지 않았어.

○**증인 김태규** 굉장히 불쾌하고……

○**이훈기 위원** 조용히 해요!

○**증인 김태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중지시키세요.

○**위원장 최민희** 잠시 중단시키고요.

○**이훈기 위원** 물어보지 않았어.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최민희** 김태규 대행, 끼어들지 마세요.

○**증인 김태규** 저에 대한 직접적인 인신공격이었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내란범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훈기 위원** 김태규 대행……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 계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위원장님, 일부러 자극하는 것 좀 자제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예, 3분에서 다시 시작하시고요.

김태규 대행……

○**최형두 위원** 아니, 이훈기 위원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김현 위원** 최형두 간사님.

○**최형두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을, 정부위원을 불러 놓고 이렇

게 뭐…… 여기가 법정입니까?

○위원장 최민희 김태규 대행.

○증인 김태규 예.

○위원장 최민희 제가 증인이나 참고인들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최형두 위원 지금 공소장 하시는 거예요?

○김우영 위원 간사님, 당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시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시지요.

○최형두 위원 좀 심하잖아, 심해.

○위원장 최민희 가만히 계세요.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할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발언권을 얻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법정에서 방청객들이 소란스럽게 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증인 김태규 상황에 맞춰서 대응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제가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증인 김태규 방금 질문 주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어떻게 처리하셨나 그게…… 그렇게 국어 독해가 안 되세요?

○증인 김태규 상황에 맞춰서 처리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답변하지 말라니까요.

○김현 위원 간사님, 저렇게 하는 것은 왜 가만 놔두세요?

○최형두 위원 아니, 지금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보면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김현 위원 아니, 저렇게 하는 것은 왜 가만 놔두시냐고.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최형두 위원 누가 봐도 질문이지요, 누가 봐도 이것은.

○김현 위원 편파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최형두 위원 아이고 참…… 그만하십시오. 좀 너무하다, 너무해.

○김현 위원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 끼어드는 것은……

○위원장 최민희 퇴정시킵니다, 퇴정. 우리가 다 봤습니다, 많이 가서. 그러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최형두 위원 아니, 내란법으로 단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김태규 위원장이 자기 얘기를 못 합니까? 그리고 이훈기 위원도 물었어요.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간사님, 최형두 간사님이 혼자 출석하신 부분에 대하여 제가 매우 감사드리고 국회의원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처지인지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형두 위원 안 어렵습니다. 동정 안 하셔도 되고. 공정하게 하셔야지요, 공정하게.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제가 말하는 데 끼어들지 말아 주십시오.

○증인 김태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기다리세요.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훈기 위원 아까 노종면 위원이 질의할 때 방통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다음에 계속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고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을 해제할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언론이 장악당하지 않아 가지고 그 상황에 계엄 해제가 정당하고 국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되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언론들이 국민들한테 알렸어요. 그래서 3시간 반 만에 할 수 없이 계엄 해제를 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계엄 해제할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연성 쿠데타, 방송장악을 위한 연성 쿠데타 그게 성공했다면 이번 계엄도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MBC가 무너졌으면…… 지금 우리가 과방위에서 여러 가지 견제를 하면서 KBS도 아주 일방적으로는 못 했어요. 그리고 다른 언론들도 완전히 포기 상태에서 조금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MBC가 만약에 무너진 상황, 언론이 장악당했으면 이번 12·3 사태에서 저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과 김태규가 한 행동은 이번 내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전 작업이었고 연성 쿠데타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사 대상에 올려 가지고 명확히 그날, 7월 31일 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잠깐만 정지시켜 주세요.

MBC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저는 이번 쿠데타가, 계엄이 있고 사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MBC가 장악당하지 않아서 이걸 막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4일 날 MBC 메인 뉴스는 상당히 훌륭했어요. 단시간 내에 모든 상황을 아주 잘 정리해 줬어요, 이게 왜 내란인지까지 해서.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도 여러 역할을 하지만 그 큰 방송사,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만큼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12월 4일에 MBC의 역할이 이번 사태가 지속되지 않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MBC가 장악당하지 않은 게 이번 계엄을 성공하지 못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이호찬 그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국민의 상식에 근거해서 그것에 맞게 제대로 된 보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고마운 일이지만 저희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제대로 보도하고 제대로 취재하고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태규 증인께 1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십시오.

○증인 김태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죄를 물을 때는 최소한의 소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을 7월 29일에 있었던 일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정적이고 상상하기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적어도 어떠한 사건과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얘기할 때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식의 논리라면 제가 권익위 부위원장이 된 것도 그 이유고 아니면 더 나아

가서 제가 아예 법원을 사퇴할 때도 그런 의도로 제가 법원을 사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건 누가 들어도 말이,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그 부분을 철회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에요. 아닙니다. 철회하지 마시고요.

○김우영 위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자료를 보고 이 계엄에 대한 준비가 지난해 4월 총선 이후부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김우영 위원 올해입니다, 올해.

○위원장 최민희 아니, 4월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논란이 나오면서 했다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김현 위원 올해 총선이라고요.

○위원장 최민희 아, 올해 총선이군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했고 이건 각자의 생각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철회할 필요 없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석 위원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강도현 차관님, 지금 이거 뭐 탄핵 표결이 내일이고 저는 가결 가능성은 높게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과방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정보통신 정책 같은 것들, 지금 산업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알뜰폰 정책이나 아니면 또 단통법 정책 이런 것들,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추진됐던 정책들일 텐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정부가 계획돼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주셨지만 국회에서 법이 정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리고 그거 외에 정책적 판단에 대한 제4이동통신 추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거는 지금 계엄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하고는 관계없이 저희의 판단에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곧 조만간에 입장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준석 위원 김태규 위원장님, 잠깐 제가 좀 실무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과 범야권 주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국무위원하고 검찰 공무원들 탄핵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통위원장도 지금 탄핵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심리도 이제 진행되고 있고 변론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야당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이런 큰 사고를 치실지 몰랐기 때문에 우선 우르르 이렇게 탄핵을 걸어 놨는데 원래 탄핵심판이라는 건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태규 예.

○**이준석 위원** 그렇다면 이 형사소송법상 원칙 중의 하나로 보통 선입선출을 얘기하는데 이 원칙이 현재에서도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증인 김태규**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준석 위원** 선입선출로,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처리해서 내보낸다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증인 김태규** 글쎄요, 그거는 현재 내 사무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선뜻 말씀드리기에는.....

○**이준석 위원** 왜냐하면 단일 재판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하나를, 여러 개의 탄핵 건을 하나의 재판부가 심리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태규** 예.

○**이준석 위원** 그러면 법관의 입장에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증인 김태규** 통상적으로는 저희들, 법원 안에서는 배당이 순서대로 들어오면 그 순서대로 컴퓨터 배당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제가 나서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준석 위원** 동시에 여러 건을 진행하는 상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거의 장관 한 6명, 장관급 6명에다가 대통령 탄핵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 김태규**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일 처리할 때는 당연히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현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권한 행사가 정지된 탄핵 상태에서는 사직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태규** 예.

○**이준석 위원** 그러면 이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맞겠네요? 동시에 아니더라도 결국은 다 처리해야 된다.....

○**증인 김태규** 예, 결국엔 다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걸 좀 질문드렸고요.

지금 혹시 방심위에서 나와 계신 분 있으신가요?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나와 주시지요.

방심위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작년에 운영하다가 접었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종결했습니다.

○**이준석 위원** 예, 끝냈지요.

그런데 그 가짜뉴스 심의 기능 자체는 아직까지 방심위에 존속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맞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신속심의 제도가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신속심의가 가짜뉴스를 심의해서 그것이 가짜뉴스인지 판별까지 내려 주는 기능이 있는 거 맞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지금 현재는 신속심의를 통해서 그런 가짜뉴스라는 테두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오늘 본 의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근의 담화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짜뉴스로 신고하려고 그러는데 심의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준석 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같은 것을 보면요 지금 이런 내란 상황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거짓 해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전파 타는 것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심의는 심의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보좌하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심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그 부분은 심의위원들께서 판단하실 사안입니다.

○**이준석 위원** 왜냐하면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에 보면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서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본인이 방송 또는 담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 본인에 대한 변명 또는 가짜뉴스를 전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화 보셨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예.

○**이준석 위원** 그러면 담화 보시고 그 내용 중에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거는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심의의 대상이 돼야 되고 방심위도 대통령을 심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소관입니다.

○**이준석 위원** 유상임 장관님.

○**증인 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이준석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탄핵의 상황에 비춰 가지고 이번에 국무회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셨다고, 초기 계엄할 때, 그렇게 중언하신 거 맞지요?

○**증인 유상임** 예, 못 했다고 했습니다, 안 했다기보다는.

○**이준석 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 아무래도 총리님이라든지 기재부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분들의 중언을 보면. 최소한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 정도의 그런 의혹을 지금 범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나중에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도 범야권에서는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리와 기재부장관 이런 분들이 그런 권한대행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또 2차적인 탄핵이나 이런 것이 걸리게 된다 그러면 혹시 본인의 승계 순위가 몇 번인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유상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몇 번입니까?

○**증인 유상임** 글쎄요. 사회부총리 다음의 번호로 돼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아까 제가 김태규 대행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탄핵심판이 굉장히 지금 많이 걸려 있고 선입선출의 원칙이 만약에 적용된다, 현재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앞에 있는 거 다 처리하고 오려면 한참이고, 그러면 상당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방부장관도 승계하려는 사람이 없고, 이번에 보면 대통령께서 국방부장관을 두 분에게 순차적으로 제시했는데 다 거부당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정상적이지요. 지금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의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앞에 다 그렇게 탄핵돼서 기재부장관 또 총리 다 탄핵된다고 한다면 국무회의가 진행은 될 수 있는 겁니까?

○**증인 유상임** 예, 형식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져도 형식상으로는 가능한데 그러나 그 후임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장관이 없는 각 부처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글쎄요, 그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염려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이건 이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상당하게 혼란을 주고 또 국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줄 것 같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준석 위원**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을 처음 겪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게 책임을 지고 결단 내리지 않으면 국무회의 자체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질문드리고자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어준 참고인이 출석했습니다.

김어준 참고인은 여러 가지로 나오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출석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신상발언을 요청했고 김어준 참고인에게 신상발언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신상발언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인 김어준** 예.

○**김현 위원** 나가서 증언대에서……

○**위원장 최민희** 아니, 앉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현 위원** 앉아서요?

○**위원장 최민희** 건강상의 이유로 앉아서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자료도 봐야 되고…… 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아니, 시간 제한을 두셔야지, 시간 제한을. 의원도 7분밖에 안 하는데…… 그리고 김어준을 언제 협의했어요, 저랑?

○위원장 최민희 하십시오.

○참고인 김어준 제가 저널리즘 영역의 언저리에서 종사한 지 20여 년 동안 수많은 제보를 받아 왔는데 한 번도, 어떤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게 위험을 감수한 이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제 나름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보자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계엄 직후 어떻게 피신했습니까?

○참고인 김어준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즉시 피신하여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저에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가늠하고 남아 있는 시간 동안 할 일을 정리하였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암살조 얘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이 HID 암살조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된 후 암살조인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과거에 암살조를 들은 것으로 혹시 착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참고인 김어준 그런 의혹 제기가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암살조 이야기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월요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김병주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근거는 오늘 어쩔 수 없어 처음 밝힙니다만 김병주 의원에게 암살조 제보를 한 사람이 접니다, 김병주 의원에게 제가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김병주 의원이 저로부터 처음 이야기를 듣고 첫 반응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었고, 서너 시간 후에 사실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김병주 의원에게 문의하시면 크로스 체크가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암살조 외에 또 제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어준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역시 김병주 의원에게 전달하였고, 그 공개 여부는 김병주 의원이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살 관련하여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메모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참고인 김어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감안해서 들어 주십시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작전의 목적은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살 요구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더 있습니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그 담당 부대는 김병주

의원 또는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위원장 최민희** 매우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제보자가……

○**최형두 위원** 그런데 이건 사실 국방위에서 따져 봐야 될 문제인데 언제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까?

○**김현 위원**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듣는 거예요, 위원님.

○**최형두 위원** 아니, 그래도 시간을 정하셔야지요.

○**참고인 김어준** 더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말씀하십시오.

○**참고인 김어준**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여전히 위협이 계속된다고 말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참고인 김어준** 우선 이 이야기가 위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우방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위협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건희 씨 관련 제보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김건희 씨가 OB(올드 보이), 기관의 은퇴한 요원들을 뜻하는 OB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 그 독촉의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불완전한 제보이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저 혼자 알고 있었을 내용인데 어제 윤석열 담화를 듣고 혹여라도 그 OB에 대한 독촉 전화가 사회질서 교란과 관련될 일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군다나 남편이 군통수권자인 상황에서 그 어떤 위협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개하는 바이고요.

○**위원장 최민희** 혹시 더 말씀……

○**참고인 김어준** 두 번째는 이 역시 평상시라면 황당한 이야기라고 다루지 않았을 제보인데 어제 담화를 듣고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계엄 후 개헌을 통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통일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하여 이 역시 어제 담화를 통해 본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보아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면 불완전한 채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저는 제 짧은 소견인데 윤석열의 군통수권과 김건희의 통신수단을 하루빨리 제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정보가 아니라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혹시 더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참고인 김어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인 김어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말하였고 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은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누가 신원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질의를 못 받겠다고 하십니다. 사전에, 지금 제보 내용을 다 얘기하려 나왔고 그리고 이 이외의 구체적인 것은 박선원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이 추가로 밝힐 것이다, 질의에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인 김어준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추가로 질의를 해도 답변할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참고인 김어준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면 하나만……

○김현 위원 최형두 간사님 한 분에게만 드리지요.

○최형두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이 물어 주세요.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신변 보호 요청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했고……

○최형두 위원 누가 신변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국회사무총장이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국회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외부에서, 저렇게까지 이야기한다면 신변 보호를 요청해서 신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현 위원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최민희 그건……

○최형두 위원 본인이 하고 있다고요?

○김현 위원 그건 저희가 추가 조치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공권력이 해야지요. 저렇게 말한다면……

○김현 위원 공권력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 공권력이 문제가 있는 건데.

○최형두 위원 참 나.

○위원장 최민희 지금 김어준 참고인의 경우는 공권력에 의해서 체포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변 보호도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김어준 참고인이……

○김현 위원 공익제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공식적인 신변 보호 요청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참고인 김어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최형두 위원 아니, 그렇게 위험하면 정부…… 지금 이제 계엄이 끝났습니다. 국회가 의결했고……

○김현 위원 잠깐만요.

최형두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더 안 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민희 이제 이석해야지요.

○김현 위원 이석을 하라고 하세요.

○최형두 위원 아니, 그렇게 심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노종면 위원 그 말씀은 그렇게 심각한데 왜 신변 보호도 안 하냐, 못 믿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최형두 위원 아니, 지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아니, 노 위원님은 말씀을 그따위로……

○노종면 위원 그렇게 오해받으실 수 있어서 그래요.

○최형두 위원 무슨 오해를 받아요, 내가 받지.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들, 간사께서 이석시키라고 합니다, 김현 간사께서. 그 제안을 저는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김어준 참고인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12월 9일 날 이렇게 해 놓고 어제 뉴스를 가지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심각한 문제고 저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경찰도 못 믿고 아무것도 못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가? 우리 스스로도 아무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민희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12월 3일 끔찍했습니다. 제가 광주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5·18이 생각나는, 비상 계엄하의 5·18이 생각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김어준 참고인의 오늘 진술은 정말 치를 떨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는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계엄 해제 후 탄핵을 거쳐서 즉각 체포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마치 어린아이 수준의장님 무사한테 칼을 쥐어 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군통수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담화, 일반 국민이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체포되지 않고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장관을 새로 지명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속히 직무정지가 되어야 합니다.

유상임 장관님.

○증인 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조인철 위원 지금 저는 내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상임 아까 내란 여부는 사법적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과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 수반과 협의해야 될 일이 생겼다라면 누구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증인 유상임 현재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업무는 지금 국무위원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총리께서 소집하는 국무회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총리도 피의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누구와 협의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유상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인철 위원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 발표 시 어디에 계셨습니까?

○증인 유상임 집에 있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가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그랬을 때 국무위원이나 공무원들은 어떤,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증인 유상임 그 시간에 저는 조금 늦게 집에 제 업무를 마치고 와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한테 통화를 하려고 애를 썼고 또 우리 부처의 간부님들하고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국무위원들이 그런 비상시국에는 일정 시기에 어떤 장소에 대기하든 유사한 장소에 대기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무위원 정족수가 부족해서 계엄 해제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증인 유상임 예, 제가 갔을 때는 의결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돼서 기다렸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현 정부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어떤 위치에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차관님들 어디 계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저는 퇴근하고 집에서 언론을 통해서 사태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인철 위원 텔레비전 보고 계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세종 자택에 있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 비상사태에 전부 그렇게 대기만 하고 있었던 거지요?

○증인 유상임 예. 그런데 사실 규정상에는 위치할 장소가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조인철 위원 어떤 조치가 바로 떨어져야 되겠지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가까이 가서 무슨 대기를 하든 국무위원이면 모든 대통령의 행위나 국가의 행위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즉각 조치가 가능한 곳에 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조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건 그거고 만약에 지금, 통수권자도 사실상 불능 상태입니다. 내란수괴라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온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유상임 지금 헌법상에서는 아직 대통령께서 군통수권자고 외교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호출한다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철 위원 호출하면 가는데, 그러면 과기부장관으로서 모든 통신수단을 다 멈춰라, 장악해라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인 유상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위법한 지시이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조인철 위원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증인 유상임 예, 그것은 장관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 조인철 위원 김태규 대행, 지금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우리 현안질의 때 업무 협의는 대통령실과 계속하겠다라고 했어요.
- 증인 김태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조인철 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다, 누구하고 합니까? 대통령하고?
- 증인 김태규 제가 대통령님하고 직접 뭐 이렇게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 조인철 위원 대통령실과 업무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대통령과 하는 겁니다.
- 증인 김태규 어쨌거나 지금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는 아니시기 때문에 필요한 선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조인철 위원 법적으로 내란수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 증인 김태규 그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
- 조인철 위원 사법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대통령이 시키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증인 김태규 그걸 그렇게 가정적으로 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으시는 거는,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조인철 위원 국무위원급입니다.
- 증인 김태규 제가……
- 조인철 위원 국무위원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못 하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증인 김태규 상황이 오면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 조인철 위원 리더입니다, 리더. 그래서 지금 가정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 증인 김태규 상황이 오면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 조인철 위원 그 맞는 대응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하거나 대통령실과 협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 증인 김태규 협의가 필요하다면……
- 조인철 위원 필요하다면?
- 증인 김태규 해야 되겠지요.
- 조인철 위원 협의를 한다고요? 어떤 필요한 상황이 있을까요?
- 증인 김태규 아니, 그걸 지금 제가……
- 조인철 위원 대통령이 이미 범법자인데……
- 증인 김태규 가정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조인철 위원 이게 방통위원장 대행의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김우영 위원님 하셨어요?

○김우영 위원 먼저 하세요.

○김현 위원 김우영 위원님이잖아요. 아, 정동영 위원……

○위원장 최민희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정동영 위원하고 바꾸셨습니다.

○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PPT 준비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오늘 중앙일보 1면에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태규 직대, 혹시 오늘 이 기사 보셨나요? 보셨지요?

○증인 김태규 소상하는 모르고……

○김현 위원 보셨지요? 질문이 ‘보셨지요’예요.

○증인 김태규 헤드라인만 봤습니다.

○김현 위원 왜냐하면 방통위는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해서……

○증인 김태규 예, 헤드라인 봤습니다.

○김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같은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습니까?

○증인 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김현 위원 답변하세요.

○증인 김태규 방금 답변드렸습니다.

○김현 위원 적절치 않다?

○증인 김태규 예.

○김현 위원 그러면 통상 ‘이다, 아니다’에서…… ‘생각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없다, 계엄에 대한 생각도 없고?

만약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더라면, 만약입니다. 그러면 어떤 입장을 피력했을 것 같습니까?

○증인 김태규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김현 위원 어떤 입장을 피력했을 것 같습니까?

○증인 김태규 그 역시도 가정적인 질문이라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신 적 있습니까?

○증인 김태규 달리 그런 적 없습니다.

○김현 위원 사과하십시오.

○증인 김태규 그 역시도 저는 지금……

○김현 위원 사과하십시오.

지금 사과 안 한 국무위원은 딱 한 명, 김문수 장관이었습니다.

직무대행,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증인 김태규** 사법적 판단이 앞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어떠한 의사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현 위원** 사과하지 않는 겁니까?

○**증인 김태규** 사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는 거지요.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증인 김태규** 그것도 제 의견을……

○**김현 위원** 조성은 사무처장 나오세요.

고위공무원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이런 상황이……

○**김현 위원** 사과할 용의가 있으면 깔끔하게 사과하시고요. 없으면……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안타깝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김현 위원** 만약에 지금 이곳에 방통위가 아니라 감사원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위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어때야 되는 겁니까?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에 불복종하겠다고 장관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위공무원들은 어떤 태도여야 됩니까? 지금처럼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사과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김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2차관님, 입장 얘기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계엄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현 위원** 국민들이 공포와 생명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있습니다. 장관께서 사과를 미리 드렸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사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비상계엄에 따른 통신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뉴스, 다음 카페가 접속 불가, 댓글 작성 불가, 접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다음 12월 7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모였는데 통신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내일 있을, 12월 14일 탄핵에 대한 온 국민의 집중, 그다음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만반의 대비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일단 방송발전법에 의거해서 통신 소통에 대해서는 7일 날도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14일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 위원** 특히 댓글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이것은 21세기 대한민국이 통신 강국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담화문이 발표했을 때 어떠한 내용일 거라는 걸 몰랐다 치더라도 비상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비상상황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다시 한번 조처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방통위가 앞서 답변서에 보면 비상한 시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증인 김태규** 예.

○**김현 위원** 없습니까?

○**증인 김태규** 전시 매뉴얼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전시가 아닌 평시에 비상계엄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증인 김태규** 예.

○**김현 위원** 없습니까?

○**증인 김태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유상임 장관, 전시가 아닌 평시에 비상계엄 상황의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 있습니까?

○**증인 유상임** 거기에 대한 별도의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선이라도 또는 무선이라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 위원** 을지훈련, 충무훈련 왜 합니까?

○**증인 유상임** 그것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합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충무훈련이 발동된 겁니다.

○**증인 유상임** 그거는 전시, 재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현 위원** 비상계엄 상황입니다. 충무훈련이 발동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계엄이 발동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치가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그 조치에 따라서 방통위에 사람을 보내라고 연락을 받은 겁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을지훈련에 따르면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인 김태규** 전체적인 을지훈련 매뉴얼을 제가 숙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현 위원** 조성은 처장 나오세요.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비상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씀……

○김현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비상연락망 가동하고 비상체계를 유지하도록……

○김현 위원 매뉴얼 얘기하는 겁니다, 을지훈련상 매뉴얼.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매뉴얼 내용은 기밀사항이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현 위원 정말……

들어가시고요.

기조관 나오세요.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을지훈련 관련된 부분도 비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 위원 아니, 비상상황이 발생했어요. 계엄령이 발동됐어요. 그러면 사무처장이 없고 직무대행은 설거지하고 있고 그러면 그다음 기조국장은 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냥 전화 보고 있어라? 국가기간방송사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무실로 출근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매뉴얼상.

들어가세요.

○위원장 최민희 다 하셨어요?

○김현 위원 시간 지났어요.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장관님, 12월 3일 그날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으니까 낮에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하고 계셨습니까?

○증인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김태규 직무대행님, 12월 3일 당일 일상적인 업무 수행하고 계셨습니까?

○증인 김태규 예.

○이해민 위원 판사 출신이시니까 직무대행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엄선포 조건이 뭐지요?

○증인 김태규 전시, 비상사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민 위원 전시, 사변, 비상사태.

그날 두 분 다 일상생활 하고 계셨습니다. 계엄선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판사 출신이신 직무대행님?

○증인 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해민 위원 자꾸 사법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사

태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 사과했습니다.

○증인 김태규 그들은……

○이해민 위원 장관님도 하셨지요? 사과하셨지요?

○증인 유상임 예.

○이해민 위원 저는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타당하지 아니한 태도인지를 좀 짚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일상생활 하고 있었고 저도 일상생활 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이것이 내란죄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자, 지난 9일 월요일이었지요. 과방위 전체회의 여기 오셔서 직무대행께서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배석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배석하셨나요?

○증인 김태규 예.

○이해민 위원 해서 내란 사태에 대한 본인의 철학과 소신 말씀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처럼 사법 판단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말을 할 수 없다 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나요?

○증인 김태규 국무회의 중에는 특별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 말씀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고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대통령 궐위 시에 권한대행 몇 순위시지요?

○증인 유상임 4순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지요.

계엄 인지에 대해서도 되게 늦게 아셨고, 뉴스 보고 아셨나요?

○증인 유상임 예, 집에서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이해민 위원 회의에 참석했던 11명의 동료 장관 중 아무도 장관님께 연락 안 하셨나요?

○증인 유상임 예, 그때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해민 위원 이번에 열렸던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셨을까요?

○증인 유상임 예, 참석했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란으로 인한 국정 혼란 상태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셨을까요?

○증인 유상임 글쎄요, 내란이라는 문제는 사법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사과한 것은 그냥 쇼였나요?

○증인 유상임 그것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민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타를 하냐면 거기에서 사과를 하셨다는 것은 본인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고개 숙인다고 사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위중한 자리입니다.

2017년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내용이 이번 내란에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12시간 내에 부처별 5급 이상 공무원 2명씩 계엄사로 차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해서 방통위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 연락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12월 4일 1시 15분, 2시 5분, 3시 30분, 아마 1시 2분쯤에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지요. 그 이후에도 연락관 파견 요청이 왔다는 것이 저는 크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나오시면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과기정통부에는 연락관 파견 요청 없었습니까?

○**증인 유상임** 없었습니다.

○**이해민 위원** 이거는 어느 곳은 비어 있고 어느 곳은 행하고 정말 뒤죽박죽인 그런 계엄이었네요.

만약 계엄이 지속됐다면 다음 단계는—두 분은 방통위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장관님이시기 때문에—모든 언론에 대한 보도 검열 그리고 인터넷 포털, SNS 통제입니다. 이걸 어기는 사람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특히 방송 부분은 유상임 장관님하고 김태규 직무대행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간 방송 정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다. 필요시에는 상상하기도 쉽지만 전국 단일 방송으로 KBS 1TV만 나가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두 분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지 그 책무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배석하시면 가서 사과한 것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국무회의 가서 발언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 앉아 계시는, 물론 직무대행님이시긴 하지만 과방위에서는 그래서 인사청문회 여러 날 하면서 국무위원들 국민을 대신해서 꼼꼼히 검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란이 발발한 지 열흘이 넘었어요. 그런데 국군통수권자는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로 되어 있는 윤석열 씨입니다. 윤석열 씨가 이판사판으로 2차 계엄 선포할 수도 있다는 트라우마, 전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신과 의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2차 계엄 선포되면 두 분은 앞서 이야기한 조치들, 방송장악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입장을 분명히 하고 소신 발언을 국무회의에 가시면 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국무회의 이다음 언제 열립니까?

○**증인 유상임** 보통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고 경제 관련 장관회의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국무회의 가서 비상계엄,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두 분 다?

○**증인 유상임** 내란죄라는 그런 것은 사법적인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부적절합니다.

○**이해민 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을. 자꾸 발언을 거부를 하시거나 늦추시면 내란에 동조할 의향이 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전에 KBS 사장 청문회 때 제가 어떤 댓글로 저런 장면이 있다는 사실을 일반 주민이 알려 줘 가지고, 그때는 사실 어떤 우연의 일치 내지는 약간의 코믹한 장면 정도로 저 장면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니 올 1월인가에 그 파우치 방송 할 때 윤석열 내란수괴는 그 이전 11월 달에 개봉된 ‘서울의 봄’을 분명히 봤을 것이다, ‘서울의 봄’을 본 많은 시청자 또 국민들은 나라의 헌법과 국민의 주권을 전복한 신군부의 만행과 거기에 놓락당하는 엘리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저런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반면에 윤석열은 하나회의 수장인 전두환이 했던 방식으로 언론의 줄을 세우고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의자를 권하고 골프장에 가서 계엄을 모의하는 협조자들을 회유하고…… 이게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까 김어준 언론인이 암살조가 가동됐다라고 하는 제보와 폭로는, 이건 내란 목적의 살해에 해당됩니다. 이건 사형을 언도할 사안이에요.

방심위 사무총장님 나와 주십시오.

올 4월과 6월에 전시 대응 관계기관 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국방부가 방심위원회를 불러서 회의를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방심위에서 전시 대응 관계기관 회의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제 보도가 있어서 담당 비상계획관에게 확인을 했더니 참석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 전시 대응 회의의 핵심이 위기 시기에 허위정보, 유언비어, 가짜뉴스 이런 데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회의였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예, 2024년 을지훈련에 대비해서 허위조작정보 관련 논의 회의 참석을 요청받았고 방송·통신 심의 절차 그리고 충무계획상의 임무를 설명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우영 위원 이게 단순히 그냥 허위의 어떤 조작정보를 국가위기 상황 때 대응하기 위한 그런 모의훈련의 차원에서 방심위는 갔겠지만, 이번에 포고령 2호가 뭔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가짜뉴스, 허위선동 금지예요, 가짜뉴스 금지.

3이 뭐니까? ‘언론사는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예요.

방통위 사무처장님 나와 주십시오.

방통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시 대응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참석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 자리에서 전시에 언론사에 대한 가짜뉴스라든가 허위 보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참석

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우영 위원** 비상계엄이 발동을 했고 포고령 2호, 3호가 소위 국민의 알 권리, 말할 권리를 유언비어 내지는 가짜뉴스로 억제하고 언론사에 대해서는 계엄사가 통제한다. 언론사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 사전 예비훈련을 한 게 아까 얘기한 전시 사전 대응 회의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거에 보안사가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 지침을, 보도 지침을 내리고 그 사전검열하에 보도가 나가도록 한 그 행위를 똑같이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자라고 하면 그런 12·12나 각종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있었고, 그것 우리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방통위 권한대행,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뭐 무관한 일이고 사법적 판단의 일이기 때문에 할 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헌법을 전복하고 국헌을 문란시키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의견을 갖지 않는 것 자체가 내란에 대한 동조 행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어쨌든 심대한 어떤 염려를 끼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우영 위원** 저는 언론·방송 분야의 내란을 위한 사전 예비적 작업이 작년 9월부터, 특히 방심위의 가짜뉴스 신속대응 시스템을 가동한 다음부터 진행되어 왔고 올 7월 31일 두, 이진숙·김태규에 의한 KBS 방문진에 대한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위법성 그게 바로 예비적 음모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7월 31일 날 회의의 그 목격자시지요, 사무처장님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회의에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우영 위원** 어제 기조판이 현재에 나가서 관련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7월 31일 KBS 이사회 또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진숙·김태규, 두 방송 장악 기도 예비 음모자들, 그들의 행위가 만천하에 폭로되고 규탄받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오늘 정말 공직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치의 위기가 부른 국가적 위기 사태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잘 관리해서 빨리 극복하자는 이런 국회 상임위의 취지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국회의원으로서는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여야 국회가 지금 신속하게 계엄의 뇌관을 해제해서 민주주의 복원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사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이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제압할

능력이 있다, 또 하나 우리 군이 더 이상 이런 쿠데타나 계엄령에 동원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위기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빨리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만 시장에서의 불안감 같은 게 상존합니다. 여기에서 근대 국가의 또 다른 기둥인 우리 관료들, 전문 관료들의 능력과 실력과 그리고 인테그러티(integrity)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막스 베버는 심지어 지혜의 집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위기일수록 각자의 전문식견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항상 모든 척도를 이렇게 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제 정부 현안질의에서도 확인했지만 국무위원들이 계엄령 사태 때 보여 주신 그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우리 관료 조직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속하게 국가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저희들은 신뢰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위기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번 굉장히 위험한…… 저는 처음에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KTX 타고 올라오면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뉴스인데, 아닌 말로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것인지, 그게 가능한 일인지, 백주 대낮에. 그래서 나중에 네이버하고 이런 것도 다 그때 단절 사태가 있고 했는데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식의 혼란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오늘 국회의 상임위를 떠나서 지금 각기 12월 3일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만일 이런 국가적 사태…… 심지어는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경험했고 뭘 했지만 지금 딥페이크를 가지고 온갖 뉴스를 다 만들 수 있는 세상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모두가 의심하고 불안한 세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각각 컨틴전시 플랜뿐 아니라 다양하게 함께 지금 현재 발생했던 사안을 시나리오 삼아서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직대와 또 공직자들이 참 큰 곤경에 처했는데, MBC 이사나 KBS 이사가 바뀐 것은 이런 무슨 전조 때문이 아니고 임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기 끝난 사람을 누군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방통위가 2인 체제이기 때문에 5인 체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KBS 사장 역시도 사장 임기가 끝나서 새롭게 된 것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정치가 시국을 빨리 안정시키고 더 발전시켜 가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위태롭게 만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훈기 위원님이 계엄을 해제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지금 지켜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유명한 김어준 씨를 내가 오늘 직접 봤는데 평소의 그 주장과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김어준 씨도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자유와 또 만일 그런 분이 위협을 당한다면 국가가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 대표도 경찰, 경호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보호하는지, 만일 그만큼 위협하다면 저는 오히려 야당 대표를 경호하는 팀들한테 부탁해서라도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가 있는 만큼 자유의 책임을 져야 되고, 방송심의 위원회는 지금 갈수록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어려워지고 또 이미 허위가 났는데도 허위

사실을 정정보도 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위원님들께, 지난 며칠간 저희들이 전부 이 문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계속되어서 어제 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했던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 글로벌 포럼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을 내가 만나서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클라우드 주관의 마지막 날이어서 클라우드인의 밤에 참석했는데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인들이 더 힘을 가지고서 이런 정치적 위기 사태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세한 트랜스크립트와 또 음향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튜링상에 빛나는 얀 르쿤 교수라고 합니다.

○한민수 위원 한 사람은 알겠네요, 보면.

○최형두 위원 예?

○한민수 위원 한 분은 알겠어요, 누구인지.

○최형두 위원 한 분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몰라도 됩니다. 오른쪽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사실 영광이었는데 우리가 아마 좀 전체가, 의원총회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과 함께 다음 기회에 우리가 같이 한번 보든지 아니면 웹세미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우리 AI 기본법에 관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보여 주실까요? 슬라이드요.

AI 기본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AI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건 두 사람이서 한 것을 우리 영어 잘하는 보좌진들이 있고, 또 요즘은 AI가 이걸 딱 바로 트랜스크립트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프루프리딩(proofreading)을 거쳐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규제를 많이 할수록 AI 발전에 어떤 저해요인이 되는가를 이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EU의 경우도 따지고 했는데 이 내용은, 다음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체로 진홍 쪽에 좀 비중을 두는 방안이었습니다. 진홍을 위해서는 오픈소스가 돼야 되고 오히려 여러 위험성을 생각한 많은 규제는 이런 오픈소스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다, AI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대목을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예산도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이 검토되고 했습니다만, 또 하나는 AI 컴퓨팅 인프라에 대해서는 조인철 위원님, 정동영 선배님 해서 함께 예산 협의를 많이 했던 것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또 황정아 위원님 주신 예산도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감액안 때문에 좌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이 있는 만큼 함께 복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나중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간사님께서 잠깐 조율 좀 해 주시고요. 그사이에 PPT 띄워 보세요. 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통과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주세요.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김태규 전 판사가 답 안 한다 그래서 판사 전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잠깐 하고 넘어가요.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힙니다’.

이게 법원행정처 입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2. 현안질의 추가 자료제출요구의 건

(13시00분)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현안질의 추가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하여 노중면 위원, 황정아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2024년 12월 16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형두 위원 예, 잠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5분 드리세요. 표결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5분까지는 필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2분. 제가 잘못 말했어요. 2분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5분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압니다. 아까 질의한 건 아는데, 그러나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핸드폰 기기 변경 내역을 아마 통신사에 요청하는 것이지요. 요청하는데 이해당자들이 보면 비서실장, 민정수석, 장관, 장관, 장관들인데 이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설명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핸드폰 기기 변경이 12월 한 달 동안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몇 년 동안을 하는 겁니까?

○**노종면 위원** 12월로 된……

○**최형두 위원** 12월 한 달 동안 기기 변경을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까, 아니면……

○**노종면 위원**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글쎄,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야 검찰 수사에서 또 공수처 수사에서 밝혀질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약간의 프라이버시적 성격은 없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거는 KT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요청하는 겁니다.

○**최형두 위원**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 이건 충분히 설명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의심에서 이런 걸 하는지 짐작은 됩니다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뜻 합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표결하겠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므로 현안질의 추가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현안질의 추가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현안질의 추가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 주세요.

보류하였던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형두 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현 위원** 축조심사는 넘어가세요.

○**위원장 최민희** 이거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및 대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김현 위원님이 전체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형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2분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이건 2008년에 아마, 김현 간사님 잘 아시고 최민희 위원장님도 잘 아실 텐데……

○김현 위원 전 잘 몰라요. 방심위 아니었어요, 저는.

○최형두 위원 방심위 법안 아닙니까? 이거 방심위 법안 아니에요?

○김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압니다.

○김현 위원 전 아닙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 독립기구로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2008년 인가요? 그렇게 했던 것이고……

○위원장 최민희 예, 맞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정부 공직자로 들어가서 탄핵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면 이분이 수장인데, 그 기관의 수장인데 수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각살우의 문제가 크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를 드셨는데 그거는 별도의 법을 통해서 정부기관화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구의 장을 정무직으로 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이렇게 민간기구로 둔 것은 지금 개별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민간기구로 쓰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탄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무직으로 만들어서 탄핵을 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대상인데 이건 오히려 나중에 공정성에 대해서 특히 국회가 정권교체가 있거나 다수당, 소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혼들 수 있는 이런, 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각살우라는 점을 매우 걱정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도 지금 당초 입법취지와 다른 내용이라 그래서 법사위에서라든가 또 여러 시민사회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방심위를 불러서 충분히 방심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많고, 지금 현재 몇 건은 또 재판까지 가 있는 사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방송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로 해서 정파적 이해로부터 분리시키겠다고 했던 것에서 오히려 더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현 위원이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법률안 의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인, 반대 1인으로 법률안 의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김태규 대행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증인 김태규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김현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법률적 지위와 위촉 및 해촉 절차에 관한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셨습니다.

다만 지난 논의 과정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안의 내용이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입법 과정에서도 법률안이 더욱 심도 깊이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2시까지 이 회의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의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자료제출 요구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그래야 모두에게 기회가 갑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분 드리세요.

○황정아 위원 김태규 직무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대행,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아시지요?

○증인 김태규 잘 모르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1 대 29 대 300의 법칙입니다.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수십 차례의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남을 뜻하는 통계학 법칙입니다. 아십니까?

○증인 김태규 예, 들어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윤석열 정권 들어서 김태규 직무대행 같은, ‘내란은 위현이다. 불법이다’ 이런 말도 못 하는, 지하실에 떨어진 공직윤리를 가진 자들에 의한 위현적·불법적 행태

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의 정후 그리고 수십 차례의 위헌과 불법을 거쳐서 그 정점을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찍었습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짓밟았는데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 광증에 걸린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이건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는 물론이고 MBC까지 짓밟으려 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아무런 말도 안 합니까?

방통위 설치법 제1조 ‘이 법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는 것’, 언론을 군홧발로 짓밟고 있는데 아무 할 말이 없으세요? 그러면 그냥 직을 내려놓으십시오.

직무대행, 심판정 같은 것 만들 시간은 있고 헌법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판사를 하고 방통위 부위원장은 맡고 있으니 국민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예산에서 방통위 예산 얼마나 삭감되었지요?

○증인 김태규 기본경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30% 정도 삭감됐습니다.

○황정아 위원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증인 김태규 여기 나오네요, 62억.

○황정아 위원 2인 체제 의결, 방심위의 불법적 방송장악, 언론탄압 소송비 전액,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기름값까지 끌어다 쓰고 불법적으로 전용했던 예산들, 이진숙·류희림 인건비, 업추비 다 해서 62억 원 국회가 헌법이 정한 권능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진숙, 김태규, 류희림의 불법이 없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었습니다. 직원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란이 벌어져도 절대 바뀌지 않겠다는 아집, 김태규 직무대행은 질의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조성은 사무처장, 윤석열 내란 범죄행위 찬동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내란이라는 부분에 찬동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황정아 위원 위헌·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그 부분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황정아 위원 본인이 국무위원이었으면 계엄 선포 의결해 줬을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가정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조성은 사무처장,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뉴스타파 인용, 전용기 탑승배제 보도의 MBC 제재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2인 체제가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맞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 한번 살펴보시면 불법적 2인 체제 의결이 가능하다는 방통위의 법 해석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존립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까지 하면서 2인 의결의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에 현재는 또 어땠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불법적 2인 의결에 대해서 공영방송 장악할 목적 아니었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방송정책을 진영 논리에 따라 바꾸는 그게 국가냐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유치원생이 보더라도 너무 명확한 방송장악 의도가 뻔히 보이니 나올 수밖에 없는 질타가 아닙니까?

이번의 내란 사태에서 깨어 있는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조차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민이 피와 눈물로 쟁취해 낸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이 이번에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주권을 가진 국민이자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과 불법에 더 이상 공직자들이 동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방위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을 보호하고 내란의 부역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오늘은요 4분을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및 출석자 여러분들은 잠시 이석하셔서 화장실 갔다 오셔…… 그런 개인 용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노종면 위원** 저 질의할 건데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저 뒤에 배석한 분들 화장실을 못 갔잖아요, 지금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잠시 나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방통위 비상계획관 나와 주십시오.

좀 급히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시면서 질문을 들어 주세요.

PPT도 띄워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4일 새벽에 세 차례나 전화가 왔습니다. 세 번 다 누구인지, 어디로 누구를 보내라는 건지 안 물어본 게 사실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왜 안 물어봤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12월 4일 1시부터 4시 사이에 총 세 번의……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물어봤냐고요. 상황은 여기 다 정리해 놨잖아요. 시간 없다니까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제가 좀 경황이 없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나서 전화를 다시 할 경황은 있고, 다시 전화가 왔는데 물어볼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당시에 제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화가 온 이후에……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안 물어봤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확인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노종면 위원 보고는 왜 한 번만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보고 내용이…… 세 번의 전화를 받아서 각기 다른 내용이었다면 보고를 드렸을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다 동일했습니다. 연락관을 파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계엄 해제 의결이 국회에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가 오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들어가십시오.

합참에서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 전화, 방통위로 걸려 간 전화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번호에 대해서 계엄사령부가 설치된 곳이다라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서 국군심리전단의 전화번호라고, 그렇게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 직전까지 사용됐던 번호인 것은 맞으나 지금은 합참 지하 작전회의실에 있는 기기이고 계엄 당시에는 계엄사령부가 설치된 곳이다, 이게 합참이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계엄 해제 의결이 국회에 의해서 그야말로 긴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적어도 방통위를 통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수 시간에 걸쳐서 계엄 상황을 유지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에서 의결하자마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따랐던 것처럼,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지요?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오해받으니까 불쾌하고 억울하신가요?

PPT 하나 보여 주십시오.

이 계엄 작전, 이 내란 음모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최소한 7·8월부터 시작됐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안 치던 골프를 시작하면서 계엄에 동원된 군부대 인사들을 만나고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웃어요? 웃어요, 지금?

○증인 김태규 아니, 웃지는 않았습니다.

○노종면 위원 잠깐 세워 주십시오.

가치가 없어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당신과 우리가 처음 대면한 날이에요. 질문하는 자세를 갖췄느냐, 눈은 번들번들 의자를 찰 기세로 들어와서 앉으면서, 의자 빙빙 돌려 가면서, 기억나요? 수십 명 끌고 와서…… 그 이후,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계엄 내지 이런 상황이 올 걸 알고 우리가 좀 우스워 보였나요?

○증인 김태규 그 것은……

○노종면 위원 첫 만남 이후에 자료제출 거부하고 와서 위원이 다그쳐 묻는다고 본인도 소리 지르고, 지금도 저렇게 번들번들 웃고 있어요. 국회 정회 중에, 국회에 나와서 정회 중이라고 욕설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예요, 의심받아 짠 거고. 아니면 수사기관에 나가서 잘 해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규 위원 박상현 KBS본부노조 본부장님.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KBS는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용산 방송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북한 관련 뉴스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내란죄에 해당하는 계엄 정당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KBS 뉴스는 2023년 11월부터 5공 시대 땡전뉴스와 같은 땡윤뉴스 윤비어천가로 전락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의 북한 도발 또는 한미동맹의 대응 등 주로 여권 지지율 견인을 유인하거나 지지층 결집하는 뉴스만 나가고요. 편파 보도가 특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뉴스인지 대한민국 뉴스인지 모를 정도로 북한 관련 뉴스를 매일 대여섯 건씩 주요 헤드라인 뉴스로 다뤘더라고요. 반면 채 상병 같은 뉴스는 주요 뉴스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하나 극단적인 예를 보면 지난해 11월 23일 MBC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 7년 만에 원심을 뒤집은 법원 판결을 메인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KBS는 아쉽게도 11월 23일 당일 뉴스 초반에 방영된 10개의 주제가 전부 북한 위성 발사 건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승소 소식은 스무 번째 뉴스로 열두 번째였던 날씨 뉴스보다도 뒷 순서였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 보는 내용처럼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비교 분석한 KBS 뉴스 보도 현황을 보면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북한 관련 보도가 2배가 넘습니다. 북한 관련 보도를 톱뉴스로 다룬 사례도 거의 2배가 많아졌습니다. KBS가 윤석열의 북풍놀이,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북풍을 더 바람잡았다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참고인 박상현 지금은 수뇌부가 바뀌었는데 전임 보도본부 수뇌부가 북한 관련 뉴스에 지나치게 크게 많은 관심을 보였었다라는 것은 저런 통계로도 확인된다고 판단됩니다.

○박민규 위원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 정당화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 국지전을 유도하는 등 사전에 치밀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지시,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KBS가 용산과 공감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1년 넘게 반복적으로 안보 위험을 강조하며 여론을 호도했던 KBS, 특히 최근에는 계엄 방송 준비 언질 의혹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

인, 어떻게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참고인 박상현** 과거에 전임 최재현 보도국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던 대국민 담화가 있을 거라는 내용의 보도를 본인이 직접 기사 작성지시를 내려서 보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내란죄 구성요건에는 선동이 있고 방송과 통신을 이용한 선동의 경우에는 그 고의성과 관련 없이도 매우 넓게 내란죄가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앞으로 KBS가 내란의 강을 건너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KBS 구성원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와 함께, 국회와 함께 이겨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금 전에 의결한 현안질의 추가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오늘 회의 중 구두로 발언하신 박민규 위원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노태영 KBS 기자협회장, 박현광 뉴스토마토 기자가 계십니다. 이 두 분은 각각 신청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번이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꼭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질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첨병 역할을 해 왔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내란 사태 그리고 비상계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는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내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류희림 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무차별 소진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행태도 지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현주 사무총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방부가 주최한 회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그건 나중에 좀 실무적으로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실무적으로 챙겨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예,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정현 위원** 저희가 미리 취재를 하고 확보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어제 MBC가 보도했고 MBC 보도에도 나와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국방부 회의에 방심위가 참석한 것은 세 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차례 회의 중에 두 차례가 올해 4월과 6월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회의가 진행됐을 때 방심위는 어떤 얘기들을 했었는지 어제 보도에서도 나와 있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방심위가 보고를 했었고요. 인터넷 통신사업자에게는 자료 삭제, 접속 차단도 요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 모르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정현 위원** 비상계엄을 철저하게 국방부와 함께 방심위도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12월 5일에 예정에 없던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열렸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이정현 위원**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12월 5일 날 통신소위가 열렸습니다.

○**이정현 위원** 열렸지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페이지 즉시 삭제 의결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예, 의결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지난 4월과 6월 국방부 주최 회의에서 방심위가 보고한 내용 그대로 실행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사전에 방심위…… 방통위도 역시 국방부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됐다라고 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합니다.

이번에는 류희림 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PT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원회는 방심위에 대한 회계감사 권한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태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방심위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 동안 방심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내역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파파존스피자에서 104만 8400원, 그다음 날인 12월 5일 만년닭강정 93만 6000원이고요, 12월 9일에는 부서별 현안 관련 논의를 한다고 또다시 류희림 위원장이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피자를 구입하는 데 82만 4200원, 12월 10일 닭강정 54만 7800원입니다. 371만 9800원의 업무추진비를 불과 한 6일 사이에 몰아서 썼습니다. 월평균 업무추진비 내역은 한 200여만 원에 그쳤었는데 한 6일 동안에 몰아서 썼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현주 사무총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제가 보고 듣기로는 최근에 우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서 지연된 안건들을 신속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생이 많으면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그와 관련해서 격려하는……

○**이정현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동안에 류희림 위원장이 직원들을 그렇게 알뜰히 살뜰히 생겼느냐? 결코 아

니었습니다. 국정감사 대비 휴일 근무자 격려 차원에서 딱 한 차례 업무추진비로 간식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자, 이건 왜 그랬겠습니까? 연말을 맞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그냥 막 집행을 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워크숍이 있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예.

○이정현 위원 워크숍 어디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SKY31 컨벤션에서 이걸 했는데 롯데월드타워의 ‘국내 최고 높이의 회의시설’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고요. 이걸 임대하는 데만 임차료가 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숍에 123명이 참석해서 3472만 3059원을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행주산성에서, 또 경기도 장흥에서 한 220만 원 정도를 썼던 상황들이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데 연말에 몰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 일은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서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예산을 털어 냈습니다. 부적정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직원들의 서명을 다 받았어요. 누가 이 연구추진비로 사용한 간식을 먹었는지에 대해서까지—지금 PPT에 있습니다—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까 봐 저런 식으로 했어요.

○위원장 최민희 이정현 위원님 중단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그것은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지금 이렇게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못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중단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현안질의 다시 열겠습니다. 중단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민간 독립기구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심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민희 방금 전에 의결한 현안질의 추가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구두로 발언하신 이정현 위원님 요구 자료도 포함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지켜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예.

장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유상임 장관님, 아까 질의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을 새벽 2시 30분에 통보받았다고 하신 거지요?

○증인 유상임 예.

○한민수 위원 그리고 장관님도…… 1시 1분에 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모두 비상 계엄을 해제시켰어요, 1시 1분에. 그러면 정말 거의 정확히 2시간 29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보니까, 저는 처음에 장관께서 이 받았다는 시간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장관은 새벽 2시 30분에 받은 거고……

○증인 유상임 그렇지요.

○한민수 위원 해제는 1시 1분에 됐었고……

○증인 유상임 예, 그것 봤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사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내란수괴 윤석열이 어디 갔는지? 계엄사가 있는 데를 갑니다,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특히 보안시설이라는 결심 지원실이라는 곳에 갑니다.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등과 회의를 했고 거기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합참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장관은 헌법 제77조 5항 아시지요, 내용?

○증인 유상임 예.

○한민수 위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된다’.

○증인 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어제 그 광기 어린 담화로 윤석열 씨는 본인은 법을 지켰다, 오히려 야당이 헌법을 파괴했다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본인은 그했습니다, 윤석열은.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새벽이라 다 못 와서 정족수 부족해서 시간이 걸린다’ 이것 거짓말이지요? 장관한테 연락 간 게 2시 30분 아닙니까?

○증인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 드러나도. 해제하기 싫었던 겁니다. 국회가 1시 1분에 하고 해제를 하려면 다 이미 새벽같이, 그 시간에 누가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다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지요, 전 국무위원들이. 그러면 바로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사이에 윤석열은 합동참모본부로 가는 겁니다. 제2의 계엄을 노렸던 거예요.

저는 장관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이에 누구한테도 연락하고, ‘당연히 헌법에 이렇게 돼 있으면 빨리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해서라도 국무회의를 열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머뭇거리는 사이에 내란수괴는 다시 한번 제2의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는 지금도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 만약 탄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탄핵되기까지 하루, 24시간이 넘게 남았습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혹시 하야를 발표할까, 대국민 담화를 하니까? 다시 한번들 보십시오, 그게 정상적으로 여기 계시는 장관님이나 차관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했던 분이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는 기가 찹니다.

강도현 차관님, 조지호 경찰청장이 12월 6일과 8일 두 차례 유심기변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잘 모르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건 뭔가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능성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제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분이 거짓말을 또 했어요—국회 와 가지고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위증했다고—‘계엄 전에 대통령 만난 적 없다’. 그런데 이미 계엄령 전에, 3시간 전에 만나서 체포를 할 사람들 명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과기부장관님, 계엄 국무회의는 연락 못 받으셨다고 했지요?

○**증인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비상계엄은 언제 어떻게 알았어요?

○**증인 유상임** 2시 30분경 제 비서실장분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비상계엄 방송에 나왔는데 미리 모르고 2시 반에 알았어요, 비상계엄을?

○**증인 유상임** 비상계엄 발표는 제가 텔레비전으로 집에서 봤습니다.

○**이훈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2시 반에 국무회의 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국회에서 결의를 했잖아요, 해제결의를. 그리고 나서 그냥 집에서 대기만 했어요? 당연히 언론에서도 국무회의를 할 거라 그랬는데 그냥 집에 있었어요, 2시 반까지?

○**증인 유상임** 아니요, 그사이에 비상계엄 발표를 보면서 계속 제가 연락을 많이 시도를 했고……

○**이훈기 위원** 연락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증인 유상임** 예, 딱 두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누구요?

○**증인 유상임** 유인촌 장관님하고 그다음에 최상복……

○**이훈기 위원** 대통령실 쪽은 연락이 안 되고?

○**증인 유상임** 전의 대통령님 전화번호는 있었는데 바뀐 이후로는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못 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연락을 2시 반에 받고 3시 30분에 도착했지요?

○**증인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이것은 그냥 몇 시 시간을 안 정해 주고 국무회의 되는 대로 빨리 오라고 연락이 왔나요?

○**증인 유상임** 그냥 용산으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데 1시간이나 걸렸어요? 댁이 어디세요?

○**증인 유상임** 제가 지금 송파 거여동 쪽인데 거기서 택시를 타면 한 사오십 분쯤 갈 수 있을 텐데 들어갈 때 문제가 있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이훈기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3시 반에 도착해서 4시 27분에 2분짜리 국무회의인지 뭔지 했는데 그 1시간

동안은 뭐 했어요, 가서?

○**증인 유상임** 거기서, 저는 들어가면서부터 국회에서 해제가 됐으니 빨리 이것을 의결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정족수가 되지 않았다, 사실 그래서 계속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훈기 위원**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저번에 어디서는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고 그랬는데 2분밖에 안 하고, 국방부장관만 제안설명하고 2분 만에 끝났잖아요, 국무회의가. 그렇지요?

○**증인 유상임** 그건 아마……

○**이훈기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증인 유상임** 비상계엄 발표할 때 아마 상황이 그런……

○**이훈기 위원** 그리고 10일 날 국무회의가 열렸지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증인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이 국무회의는 원래 예정된 거예요, 갑자기 소집이 된 거예요?

○**증인 유상임** 매주 하는 국무회의입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데 이 국무회의에서 보니까 과기부도 관련 법안 얘기하고 그런 얘기만 했어요? 계엄이나 지금 시국 관련된 얘깃들은 국무위원들이 안 하고 자기 관련 부처의 법안이나 처리해야 될 안건 얘기만 했나요, 이날 국무회의에서?

○**증인 유상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상시국에 대한, 각 부처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국정……

○**이훈기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중단시켜 주시고.

방심위 사무총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방심위가 긴급 통신심의 회의 소집해 갖고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페이지 삭제 의결했잖아요. 이게 목요일 날 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이현주** 12월 5일로 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원래 10일 날 종편 4사 사장하고 뉴스전문채널 사장들 류희림 위원장이 만나려고 그랬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이현주** 아마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저는 아까 한민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2차 계엄을 계속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저는 이진숙, 김태규 두 사람도 있지만 류희림도 그 핵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계속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탄핵 반대하는 쪽에는 제재를 안 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위원장 최민희** 중단하시지요.

○**이훈기 위원** 어제 윤석열 담화를 하면서 다 연결이 되지 않았나, 어제 상황이 안 되니까 못 한 거지 2차 계엄을 어제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종편사장단 회의는 연례적으로 하는 회의입니다.

.....
○위원장 최민희 여기까지 하시지요.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준석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여전히 지금 내란 중이고 윤석열 씨가 군통수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폭로한 계엄 문건이나 오늘 김어준 씨의 진술들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내란 상태고 내란을 시도할, 제2의 계엄을 시도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에서도 이것에 대응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어제 윤석열 씨는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항전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상시보다도 더 엄중하게 업무들을 취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보면 위임전결규정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아까 대통령실과 업무는 계속 협의하고 안 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위법한 지시가 밑에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밑에서 협의해서 끝나지 않도록 장관님이 아니면 차관님들이 더 엄격하게 그 사항들을 봐야 되고 적어도 간부회의나 아니면 직원 전체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나 이런 곳에서 오는 일체의 지시는 장관 보고 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상임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켜 나가고 있습니까?

○증인 유상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인철 위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유상임 예.

○조인철 위원 그런 조치를 이미 취하셨다는 겁니까?

○증인 유상임 예, 우리는 우리의 규정과 또 법률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게 아니고 이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밑에 장관님까지 보고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안에 대해서 장관 결재 후, 보고 후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까?

○증인 유상임 그 부분은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반드시 지시하십시오. 차관님 아셨지요?

지금 대통령실은 믿을 수도 없고 현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할지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김어준 씨 이야기대로 한다면 언제든지, 특히 김건희 씨가 지금 OB들을 계속 동원해서 통화를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 혼란을 가장한,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한 제2의 계엄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것은 개별적인 겁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통신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네요. 가능한가요?

○증인 유상임 그것은 전시에 가능한 겁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전시가 아니고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85조. 맞습니까?

○증인 유상임 그것은 충무사태라는 사태가 규정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조인철 위원 우려가 있다라는 경우도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증인 유상임 이것은……

○조인철 위원 차관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우려를 드리는 게 지금 윤석열·김건희 씨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요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통신기록이 사라지지 않도록 특별조치가 가능한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법령상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85조는 주요 통신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통신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게……

○위원장 최민희 그만하시지요, 조인철 위원님.

○조인철 위원 각종 자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치를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앞서 을지훈련, 충무훈련, 화랑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방통위는 지금 안한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

비상계획관 답변하세요. 대상이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저희는 을지훈련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시에서도 하는데 충무계획을 안 한단 말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충무훈련은 시도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김현 위원 포함해서 정부기관이 다 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을지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안 했습니까? 을지훈련만……

그러면 을지훈련상으로도 비상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치를 다 취해야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어떤 조치를……

○김현 위원 직원들을 사무실로 오게 해야지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래서 병커에, 지하에 있거나 내지는 더 상황이 위급해지면 제3의 장소로 이동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 조치들이, 비상계획이 발동했을 때 그런 조치들을 실행했나요? 안 했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예, 이번에는……

○김현 위원 안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예.

○김현 위원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을지훈련 관련한 것이 몇 급 비밀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을지훈련은 3급 비밀입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왜 열람이 안 됩니까? 열람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막은 거지요, 열람 못 하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기관의 비밀에 대해서는……

○김현 위원 아니, 저는 비밀취급 인가증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는 충무 계획 실시계획을 열람했습니다. 왜 법을 어기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별도로 검토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별도로 검토했는데 못 하게 했지 않습니까? 법을 어겼습니다.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말씀드렸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 위원 제가 비밀취급 인가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열람을 했습니다, 2급 비밀문서에 대해서. 방통위는 3급인데 안 했습니다. 불법한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보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못 하게 한 거잖아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들어가세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실 김명기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현 위원 사무처장님.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김현 위원 지금 좀 전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비밀문서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열람 가능 여부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기초관 답변하세요, 거기서. 열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정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방통위는 다릅니까, 규정이? 별도의 규정으로……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다르게 운영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제가……

○김현 위원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오늘 안에.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과기부가 어떤 판단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현 위원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방통위 부위원장?

○**증인 김태규** 다른 기준보다는 그 조항 자체의 해석을 서로 달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못 하게 했잖아요.

○**증인 김태규** 못 하게 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현 위원** 사무처장,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열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보고를 안 한 겁니까? 지금 얘기가 다른데요, 어제 얘기하고.

○**증인 김태규** 규정을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

○**김현 위원**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그러면 답변합니까, 국회에다가? 규정을 검토하지도 않고 못 한다고 합니까?

○**증인 김태규** 규정에는.....

○**김현 위원** 여기 제출한 서류에 할 수 없다라고, 이미 서면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했고 어제 저녁 8시에도 그렇게 답변했고 오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증인 김태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김현 위원** 국회가 요구한 자료, 서면질의에 대해서 검토 안 하고 그러면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증인 김태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제출할 수 없고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현 위원** 어느 해당 기관입니까? 어느 해당 기관입니까? 해당 기관이 어디입니까?

○**증인 김태규** 해당 기관이.....

○**김현 위원** 관계기관장이 누구인데요?

○**증인 김태규** 국정원이나 행안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 해당 기관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 위원** 이게 국정원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증인 김태규** 모르겠습니다. 그게.....

○**김현 위원** 그러면 국정원하고 늘 상의하고 있습니까, 방통위는? 확인됐습니다, 하나. 국정원하고 늘 상의해서 방통위가 운영된다.

○**증인 김태규** 아니, 그렇게 막 넘겨짚으시면 안 되지요.

○**김현 위원** 지금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태규** 아니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태영 기자협회장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계십니까?

노태영 기자협회장은 KBS 앞에, 인근까지 장갑차가 오고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참고인 노태영**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 KBS의 보도라든가, 그리고 박장범 사장하에서 지금 파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참고인 노태영 하루 파업을 했었고요, 그저께. 지금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KBS 현재 보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참고인 노태영 저희 보도에 대해서는, KBS 30년 만에 처음으로 경쟁사와의 시청률이 반토막 난 상황이고요. 그 지표가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KBS 기자들, 종사원들은 거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투쟁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내부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위원장 최민희 기자 입장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참고인 노태영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찬반을 논의할 수 있지만 비상계엄 자체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장관님, 11일 날—이틀 전이지요—K-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 글로벌 포럼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증인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거기에서 환율 급등과 R&D 예산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환율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사태가 조금 안정화되면 환율이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어요. 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낙관적인 성격이신가 생각을 했어요.

한국 경제는 지금 초토화됐습니다. 계엄 쇼크 동안에 사흘간 시총 71조 원 증발했고요. 외국인 투자금 1조 85억 원 빠졌습니다.

슬라이드 준비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냥 예제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뉴욕에 있는 한 헤지펀드로부터 의뢰를 받은 컨설팅 펌에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계엄 알려진 후 몇 시간 내에 보내온 메일이었고요. 4일 새벽 2시 14분에 보냈네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컨설팅을 해 달라는 내용이고 국제투자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상황은 이래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장관님이 해외의 투자자라면 지금 이렇게 정국이 불안정한 곳에…… 한국 주식 안 사겠지요? 투자도 안 하겠지요?

지금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는 것이 비상계엄인데 윤석열 씨는 계엄으로 국가를, 적어도 경제 면에서는 비상사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씨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 기다리다가는 나라 다 망하게 생겼고 그래서 경제 부문만……

그러니까 과학기술하고 경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잖아요.

○증인 유상임 많이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럼에도 가셨던 거고.

탄핵 서둘러야 합니까, 아닙니까?

○증인 유상임 글쎄요, 그것은 의회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민 위원 경제만 생각하고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대답이 어려운가요?

○증인 유상임 그 문제보다는 빨리 정국이 안정되는 길로 지혜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민 위원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경제,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가 현재 뒤로 가기 시작, 추락한 것 끄집어 올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탄핵이다. 이유는 경제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씨이기 때문에, 그게 다입니다. 너무 간단한데.

해서 정말 나라 앞날 우리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동생 유상범 의원님, 국민의 힘 의원님이시잖아요. 전화해서 ‘내일 꼭 찬성표 던져라’ 설득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유상임 그런 문제는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지요. 본인의 판단을 믿어야지요. 맡겨야지요.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대통령 궐위 시 서열이 네 번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 권한을 가지고 계신 큰 직무를 행하고 계신다면 동생분한테 전화해서 경제상황 설명하고 한국투자 지금 다 끊기게 생겼고 주식시장 다 말아먹고 있고 인지하고 한 표라도 탄핵 찬성해라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것 힘드시면 전화하신 후 저에게 바꿔 주세요. 제가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 김태규 직무대행님, 가급적이면 ‘예, 아니오’로 답을 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방송 분야의 공적 최고책임자가 김태규 대행이시지요?

○증인 김태규 방통위 기관장은 맞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렇지요.

○증인 김태규 현재로서는……

○김우영 위원 군사반란 혹은 내란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비상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상황이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심각하지요?

○증인 김태규 지금 불안한 사태인 건 맞습니다.

○김우영 위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를 설명할 때 반국가세력, 종북세력, 야당의 행정기관에 대한 탄핵 남발, 의회 독재 여기에 대해서 경종의 의미로서 경고용 비상계엄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태규 제가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김우영 위원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겁니까, 동의하는 겁니까?

○증인 김태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김우영 위원 12·12 군사반란 판결문에 높은 지위와 책임을 가진 자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변명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침묵은 단순한 부작위가 아니고 한국의 언론 자유와 방송에 공적 책임을 다 해야 할 사람이 내란 행위를 방조하고 오히려 동조하는 것이 침묵 아닙니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증인 김태규 대통령…… 아니,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김우영 위원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지요?

○증인 김태규 예.

○김우영 위원 대통령이 방송 분야에 일체의 전문성도 없는 판사 출신 법률가 김태규 대행을 임명한 이유가 뭐니까? 법률적으로 복잡다단한 미디어 환경에서 잘 대응하라 그런 뜻이겠지요, 법률가니까?

○증인 김태규 방통위가 규제기관이니까 법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김우영 위원 법률가시니까, 국현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그 우두머리는 무기징역·사형·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도 이런저런 처벌 받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김태규 한 적 없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렇지요?

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그 내란 행위가 적법하지 않고 헌법에 위배되고 그 처벌이 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동조할 의사가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증인 김태규 글쎄요. 제가 나중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았는데……

○김우영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국회를 의회 독재라고 해서 군대를 보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또 군대를 보냈어요.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김태규 예, 헌법기관 맞습니다.

○김우영 위원 국현 문란이라는 게 뭐지요?

○증인 김태규 글쎄요,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현 문란이라고 그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나 선관위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라서, 위법한 방식의 비상계엄에 따라서 그 기능이 마비됐어요, 그 순간 몇 시간. 그러면 국현 문란을 일으킨 죄가 내란인 겁니다.

그러면 그 내란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왜 부인하는 거지요?

○증인 김태규 저는 부인한 사실 없습니다. 제가 입장을 밝히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적어도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증인 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김우영 위원 옆에 있는 과기부장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 김태규 그것은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방통위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심정적 동조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태규 그렇게 넘겨짚으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이제 2시에 국회 본회의를 해서 또 국무위원들은 이동하셔야 될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아무튼 우리 직업 공무원들이 지혜롭게 극복해 주십시오.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고 이건 뭐 정치에서 비롯된 일이고 또 여당으로서는 정말 유구무언입니다.

단 하나, 사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바랐던 것은 지난 탄핵 시기에 굉장한, 탄핵재판이 열리게 되면 탄핵 반대, 탄핵 찬성으로 또 광장에서 나뉘어서 아마 그 몇 개월간의 수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자칫 또 엉뚱하게 비쳐서 더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었고, 저희 당이 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정치적 합의로, 대통령과 여야 정치 간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이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유능했던 직업 공무원들께서, 공직자들께서 역할을 다해 주시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런 시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수많은 증언과 수많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재판과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인데 우리 방송 환경도 그렇고 지금 그걸 방송통신위원장이 또는 과기부가 뭘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지만……

또 하나 이것을 고의적으로, 인필트레이션(infiltration)이라고 그러나요? 외국에서도 많이 드러난 것처럼 국내의 내부적인 혼란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상당히 그럴듯한 뉴스 같은 것, 예컨대 옛그저께 미국 대사가 항의했다고 했는데 미국 대사관에서는 없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지금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KBS 아까 누가 나오셨지요? 내가 그냥 확인하려고…… 혹시 아까 KBS 장갑차 보셨다는 분이 누구셨지요, 장갑차? 잠깐 나와 보실래요?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저도 장갑차가 출동했다…… 저도 사실 그날 밤에 들어오기 위해서 거의 KBS 앞으로 지나 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저는 KTX가 12시 5분에 서울에 도착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급하게 여의도로 해서 KBS를 거쳐서 샛강 쪽으로 와서 파천교로 왔는데, 국회 정문은 통과를 안 시키더라고요, 국회대로 쪽은. 그래서 좌회전해서 파천교에서 내려서 국회로 들어오려고 거의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헬리콥터는 봤지만 그리고 경찰의 버스는 봤지만 장갑차는 내가 못 봤는데 혹시 장갑차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참고인 박상현 저희 제보자로부터, 사진을 직접 찍으신 분으로부터 받았고……

○최형두 위원 그게 KBS 맞습니까?

○참고인 박상현 예.

○최형두 위원 왜냐하면 장갑차, 사실은 군인들이 왔고 하기 때문에……

○참고인 박상현 그게 장갑차인지 아니면 지휘 차량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최형두 위원** MBC에는 혹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서서 이야기하십시오.

○**참고인 이호찬**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래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6일 날 이 사태에서 장갑차를 일체 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계엄령 사태가 분명히 있었고 또 계엄령 사태를 저희 국회가 빨리 해제시켰기 때문에 그 뇌관이 제거되었고 그게 장기화됐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참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러나 눈으로 본 것, 특히 저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본 것과 눈으로 보지 않은 것,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않은 것, 이제 KBS나 MBC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 문제에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국회 본회의가 다 돼서 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공직자들에게 너무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 사태에서도 참 책임을 덜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지혜와 그동안의 실력과 그것으로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유상임 장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태규 대행도 본회의 참석합니까? 참석하는 분 이석하십시오.

그리고 PPT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거 기록으로 남겨 두기 위해서 제가 띄웁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거짓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 다 읽어 드려야 되는데 일단 띄웁니다.

‘국회 예산이 증액됐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 대응 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만은 대응책을 못 세우겠지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에게 29분 동안 담화하면서 거짓말을 기초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것 기록을 위해서 남겨 둡니다.

김어준 참고인의 발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암살조와 생화학 테러, 둘째 한동훈 대표 등 사살 문제, 그리고 이걸 북한 소행으로 미뤄서 이건 전쟁 상황을 유도할 수 있다는 말, 그리고 김건희 씨가 OB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는 등 그리고 계엄에서 개헌을 하여 김건희 통일 대통령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 등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증언은 다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민주당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어준 참고인이 증언한 내용들에 대하여 민주당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회의 개의 관계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참고인(3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일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	2024. 12. 13.(금) 의결시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 관련
김창규	딴지일보 직원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 관련
조진섭	딴지일보 직원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 관련

○출석 위원(14인)

김우영 김현 노종면 박민규 이정현 이준석 이해민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최형두 한민수 황정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정석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이창윤

제2차관 강도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

기획조정실장 구혁채

연구개발정책실장 황판식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정책기획관 송재성

비상안전기획관 황의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권현준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김남철

통신정책관 이도규

방송진흥정책관 최준호

전과정책국장 최병택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대변인 조낙현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 김동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조성은

기획조정관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이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기반국장 박동주
 대변인 반상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이현주
 감사실장 박종현
 기획조정실장 이종육
 방송심의국장 최광호
 통신심의국장 이승만
 권익보호국장 오인희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출석 증인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출석 참고인

김어준(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진행자)
 노태영(KBS 기자협회장)
 박상현(KBS본부노조 본부장)
 박현광(뉴스토마트 기자)
 이호찬(언론노조 MBC 본부장)
 김창규(딴지일보 직원)
 조진섭(딴지일보 직원)

【보고사항】

○위원 개선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최수진	최형두	국민의 힘	2024. 12. 13.

○소위원장 개선

소위원회	사임	보임	교섭단체	연월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최수진	최형두	국민의 힘	2024. 12. 13.